

제8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제주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주류화 전략'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

2022년 11월 18일(금) 15:00~17: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

주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여성가족부지정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Jeju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

개 회 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개원 초기인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주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해 제주지역 성인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재정사업의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여 성과를 향상하고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정 및 담당기구 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은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께서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광주 지역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토론회를 빛내주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좌장이신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님이자,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님, 토론자이신 박해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님,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님, 손은성 충북성인지 예산제협의회 의원님, 그리고 성민정 한국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님, 본원 이화진 성별영향 평가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같은 뜻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와 관계 공무원들, 지역 내 활동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채로운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지역의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안녕하십니까,

단풍이 곱게 물들고 들녘에 풍성함이 가득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호형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주제로 「제8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을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예산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10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2022년 총 309개 사업의 2,553억원으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 목표 달성을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도민과 시민단체 등 여러 시각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상에서 한계와 개선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님, 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우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준표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박해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님,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님, 손은성 충북성인지예산제협의체 위원님,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 부연구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포럼을 세심히 준비하여 주신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님을 비롯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
대표의원 박 호 형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

-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5:00~17:00
- 장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등록	14:50~15:00	《등록》
1부 개회식	15:00~15:10	<p>《개회사 및 축사》</p> <p>사회: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축 사: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 대표의원)
	15:10~15:50 (40')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 발표: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젠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2부 포럼	15:50~16:50 (60')	<p>좌장: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p> <p>《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해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 • 손은성 (충북성인지예산제협의체 위원) •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 •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6:50~17:00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개회사

-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축 사

-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 대표의원)

발표 1

-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9
 -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발표 2

-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41
 - : 젠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토 론

- 강원 지역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79
 - 박해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93
 -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
- 충북 지역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101
 - 손은성 (충북성인지예산제협의체 위원)
-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최근 흐름 111
 -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119
 -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발표 •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발표문 1]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1. 들어가며

-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만 10년의 결과물이 축적되었음.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초기에 비해 양적 규모가 확장되었고, 비록,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단위에 불과한 사례일지라도 분석의 내용에서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사업의 실질적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방향을 정립해가는 지역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직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적절성 문제가 심사단계나 언론홍보 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가 하면, 분석의 의의가 모호한 상태로 제출된 보고서가 대부분이며, 제도 수행 전반의 추진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평가되는 현실임. 아직은 제도의 성과를 측정하고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은 찾기 어려움
- 최근까지 추진된 지역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연구들은 아직은 일부 광역 단위 지자체 용역으로 지역 성평등정책연구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발간되는 수준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존 연구의 내용들은 대체로 지역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과 전문가 또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의 패턴을 갖추고 있음. 이때 개선방안은 추진체계의 강화와 분석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동기 부여 장치들이 주로 언급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지자체 별로 추진체계의 강화, 작성담당자 교육 시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노력들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조례 제정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본 포럼 발표문에서는 각 지역별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또는 운영 개선방안을 간략히 검토하고 그 공통적 내용을 정리해 볼 것임. 이러한 제도개선 또는 제도 운영방법 개선 방안들이 지역별 조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초점으로 제정 현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 조례를 분석적으로 살펴볼 것임
- 또, 조례 제정 후 조례에 규정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방안의 실행 현황과 제주자치도의회 심의 및 발언현황을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성과 향상을 위한 도의회 심의의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2. 지역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과제 도출

가.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운영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통적 문제점들을 검토할 수 있음. 첫째는 대상과제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고, 둘째는 성인지 예·결산서 품질의 문제점,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 및 환류체계 부재의 문제임
- 대상과제 선정 기준 또는 적절성에 관한 논란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가 달라서, 즉 제도 특성에 대한 오

해로 생겨나는 부작용과 연결되어 있음. 우선은 언론에서 많이 유포되고 있는 “00조 성인지 예산 편성! 어디다 썼나?”와 같은 해프닝이 10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음.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대상과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도 이행 당사자들의 의견조사에서 나타남. 대체로 성인지 예산서 분석방법이나 이행효과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 생겨나는 논란임. 이를테면 공원이나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데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어야 하는가와 같은 논란들이 이에 해당함

- 두 번째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품질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임. 성인지 예·결산서에 포함되는 분석의 내용이 미흡하고, 사업집행 결과의 성 평등 효과성 검증과 거리가 먼 성과지표를 제시한 사례들이 많다는 점. 또 성인지 결산서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성과관리 부재 등으로 요약됨
- 작성 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으로는 먼저 성평등 목표 설정에서부터 각기 다른 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성평등 현황을 진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의 기준도 모호할 수밖에 없음. 또, 성인지적 분석을 세부사업단위로 해야 하는데, 관련된 기초성 별통계자료나 연구 자료가 지역수준에서 개발된 것이 많지 않음. 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제도 수행 당사자들, 즉 공무원들이 젠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숙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보면서 잣은 보직이동을 문제로 지목하기도 함. 또 다른 관점에서, 부실작성의 원인은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상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되기도 함. 그리고 이것이 제도의 효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제도의 효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고, 보직이 바뀌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임.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대하는 가장 경제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일 수 있음
-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핵심이 되는 문제점은 제도의 효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이 제도를 통해 생산되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라는 젠더정보를 궁극적으로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가의 문제임. 현행 재정과

정에서 젠더 분석서나 젠더 성과보고서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는 일반예산서나 결산서의 첨부서류나 부속서류로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 말고는 명료화된 것이 없음. 이는 앞에서부터 제기한 문제점들 모두에 걸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공통적 문제들에 대해 과제 또는 개선방안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이를테면 대상과제 선정의 문제는 대상사업 선정과 지속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작성이 부실한 문제는 각종 기초자료들을 생산하고 컨설팅을 강화해서 분석의 품질을 높이거나 더 나아가 분석양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함.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체계적 성과관리’나 ‘환류체계 구축’은 정책요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구체적 개선방법은 지자체마다 성인지 예산제도 이행현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다른 수준에서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될 것임

<표 1> 예산단계별 선행연구의 공통과제 및 개선방안

예산 단계	문제점	과제(개선방안)
대상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선정기준 모호 - 성평등 목표에 대한 합의 부재 - 성평등 목표와 대상정책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사업선정 및 대상사업 지속성 기준마련 - 성평등 목표에 근거한 사업선정 - 성과관리체계에 성평등목표 연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분석 미흡 또는 불가 - 원인분석 미흡 - 부적절한 성과지표 및 목표 - 평가(보고)자료 신뢰성 - 성과목표 미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지역단위 성별구분통계 및 젠더연구 생산 - 특정 성별영향평가 활용 및 성별영향평가와 연계 강화 - 성인지 예산서 (분석)양식 개선 - 의회 관심 및 심의역량강화
사업집행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서와 현장의 괴리 - 결산보고 활용체계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성과관리 절차 정례화 - 모니터링 실시 - 우수 작성사례 개발 및 안내 - 결산검사 및 의회결산안 심의에 성인지 결산서 의무검토 - 재정평가지표에 성평등 성과평가 지표 도입 등 환류체계 제도화

출처: 임혜경(2020), 경기도 성인지예결산제 실행방안 연구, p27에서 발표자 재구성

- 다음의 표는 각 성인지 예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책요구와 개선방향을 도해한 것임. 협의체 구성 운영과 추진체계간 연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담지원기관 설치를 제안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 성과향상 조례」에서 임의 조항으로 정한 내용을 개선방향으로 강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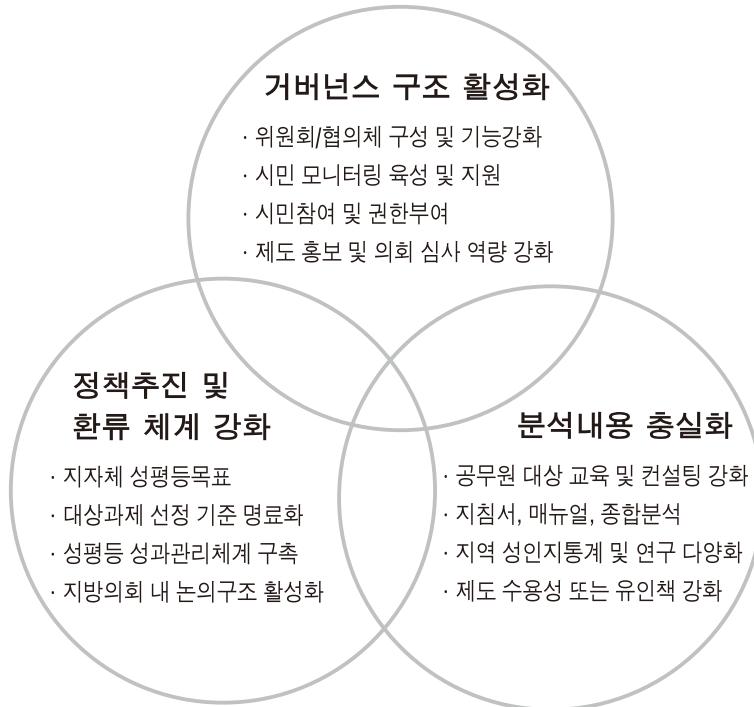
<표 2> 문제제기 영역별 개선요구 및 방향

문제제기 영역	정책요구 및 과제	개선방향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이행 합의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구성과 운영 ◆ 추진 주체 간 연계 강화 ◆ 제도운영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이행 목적과 선정 기준 및 대상범주 연계 성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별 주요 임무와 성평등 목표의 연계성 명료화 ◆ 성과관리체계에 성평등 목표 연계 ◆ 대상사업 선정기준 합의
분석 및 평가의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책영역별 기초통계 및 분석기초자료 확충 ◆ 젠더분석 기술 숙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전문직위제 도입 ◆ 성인지 예산 메타분석자료 생산 ◆ 전담 지원기관 설치 운영
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결산서 활용 방법 및 정책환류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평가체계 내 성평등 성과지표 개발 ◆ 성인지 예·결산 모니터링 정례화 ◆ 우수 작성사례 개발 및 안내 ◆ 의회 결산안 심의 지원 절차 강화(결산검사에 성인지 결산 검사 의견 보강)

출처: 나성은, 정유진(2020),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p190에서 발표자 재구성

- 아래의 그림에서는 위의 개선방안들을 과제영역 중심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내용이 되도록 각 영역별로 하나의 원 안에 정리하였음. 각 제시 영역의 원들이 교차하는 것은 각 제언들이 영역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또는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 과제 영역별 세부 개선방안



- 앞서 지적한 문제점 영역 중 성인지 예·결산서 효용의 모호함은 사실 많은 부분 지방의회의 관심과 전문화된 심의·심사과정을 통해 극복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평가단위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주목했고, 이를 지원하고자 성인지 예산제도 심의 시 활용 가능한 안내서를 개발하는 노력을 보인 바 있음(강경숙, 김희경, 선민정, 2019). 이러한 면에서 성인지 예·결산서의 효용이 모호하다는 점은 성인지 예·결산서를 활용하여 이뤄낼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성과를 상상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특성임. 이 포럼발표의 결론도 이러한 방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발전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함

3.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 방안과 조례 이행 현황

가. 전국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 관련 조례 현황과 의의

-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정책 및 재정계획과 운영이 성평등 달성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중요 도구로서 의미가 있음. 제도가 시작된지 5년 만에 제도 운영의 실질적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강화를 위한 시도로 조례 제정이 시작되었음
- 2017년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충청북도(「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와 전라남도(「전라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가, 그리고 2019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가 제정됨. 이후,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면서 경상남도(「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경기도(「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향상을 위한 조례」), 충청남도, 강원도, 부산광역시까지 11개의 광역자치시도의 조례가 마련되었다. 2021년 4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주관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2년 02월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의 조례도 만들어졌음

<표 3> 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제정일자	시행일자
광주	2017. 12. 15	2020. 10. 15
전남	2019. 08. 11	2021.08.08. 08. 11
충북	2019. 03. 29	2019. 03. 29
제주	2019. 07. 21	2019. 11. 20
경남	2020. 06. 29	2021. 01. 01
경기	2020. 07. 15	2021. 01. 01
서울	2020. 12. 21	2021. 01. 01
인천	2021. 04. 09	2021. 04. 09
제주	2021. 08. 14	2022. 01. 01
충남	2021. 06. 17	2022. 01. 01
강원	2021. 10. 29	2021. 10. 29
부산	2021. 12. 29	2021. 12. 29
부산	2022. 02. 08	2022. 02. 08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2.10.31. 기준

- 조례명에는 대체로 조례 제정 목적을 나타내는 문구가 포함되는데, ‘실효성 향상’이라는 문구가 다수 나타남. 이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지역 조례명(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을 기본 안으로 해당지역 조례안을 설계한 지역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음. 한편, 제주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광역시에서는 ‘성과 향상’이라는 문구로 조례명에 정해졌음. 실효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비해 비교적 구체화된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처럼 ‘성과 향상’ 또는 ‘목적 증진’ 등의 의미를 전면에 드러낸 조례명을 사용한 사례들 중 가장 먼저 해당 조례명을 사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명이 원본이 된 경향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비교적 성과예산주의 및 재정제도 운영 효과성을 고려한 추진체계와 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접목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음. 한편, ‘실효성 향상’ 조례와 비교했을 때 아쉬운 지점은 ‘시민참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나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임. 제주의 ‘성과향상’조례를 원본으로 삼았던 지역에서는 대부분 제정과정에 ‘시민참여’와 ‘모니터링 지원’등의 내용을 추가 또는 강화하는 형태로 제정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제정하였음. 2019년 11월 20일 “체계적인 성인지 예산제의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소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시행 시기를 2021년도로 1년을 연장”하는 부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

나. 조례 조문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 촉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 과업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과제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행하면 좋을 것으로 제안된 절차와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조례에 명시해 놓은 주요 절차와 장치로는 운영원칙 준수 및 계획의 수립, 공무

원 교육,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지원센터 설치 운영, 성인지 예산위원회, 추진상황 공개, 포상 등임. 조문에 제시한 구체 내용과 실행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주요 조문 분석

조	조문명칭	규정내용	강행규정 여부	개선요구 영역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훈련,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전 영역/ 정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제4조	운영원칙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강행	추진체계 강화
제5조	운영계획 수립	편성 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호를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	강행	추진체계 강화
제6조	공무원 교육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 마련	강행	분석내용 충실화
제7조	주민참여 및 교육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연계 추진	노력 하여야	거버넌스구조 활성화
제8조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제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강행	성과환류체계 강화
제9조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임의	분석내용 충실화를 위한 작성 지원/추진체계 강화
제10조	성인지 예산 위원회	심의	둔다 (강행)	거버넌스 구조 활성화
제16조	추진상황 공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공개	강행	거버넌스 구조 활성화
제17조	포상	사업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임의	분석내용 충실화

다. 적용과 실행 현황

1) 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의 책무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공무원 교육’을 제외한 ‘부서 간 협력’이나 ‘성인지 평가 및 환류’는 그 자체로 실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부서간 협력은 성인지 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 및 협의구조, 즉 내부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인지 평가 및 환류는 어

면 형태로든지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가 예산과정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절차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여기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실행여부를 평가하기보다는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 전반을 도지사의 책무인 것으로 보고 각 항목의 실행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2) 정책추진 및 환류체계 강화

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준수 및 운영계획 수립

○ 성인지 예산제는 조례 제4조 운영원칙의 각 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1. 중장기 차원 성평등 목표 수립
2.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 선정
3. 성인지 예산서임을 세출예산서, 사업 설명서에 표기

○ 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5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1.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
3. 주민참여 및 홍보
4.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6. 그밖에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조례 규정으로 2021회계연도부터 적용함을 기준으로 점검할 때, 2021년은 물론, 2022년,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지금 시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다만, 재정관리보고서에 간략한 형태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및 성과 기술로 이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됨

나) 환류체계로서 분석 및 평가와 활용

○ 조례 제8조 제1항 제도의 활성화와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의무

- 조례 제8조(분석 및 평가)의 제③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래의 표는 각 항목의 포함여부를 검토한 결과임. 2021년 재정관리보고서에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관련 내용은, 2020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규모에 대한 최

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음. 반면에 2022년 재정관리보고서에는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표 5> 재정관리보고서 상 조례 제8조의 포함 요소 검토 현황

분석 및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2021년 재정 관리보고서 ¹⁾ 에 포함여부	2022년 재정 관리보고서에 포함 여부
1. 성과목표와 정책·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 작성 수준 평가	×	△
2.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	×	△
3.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및 교육	×	○
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부문별·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	○
5. 대상사업별·사업유형별 비중	△	○
6. 성과목표 달성을 및 재정집행률	×	○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	○

- 2022년 재정관리보고서에 208쪽에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분석지표를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조례의 제8조 제2항의 각 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인지 예산 현황, 인식확산, 성과 등 세 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첫째, 편성 내실화와 관련한 분석내용으로 성과목표와 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작성수준 평가(제1호) 및 기능별 조직별(제4호), 사업유형별 비중(제5호)을 다루고 있음. 두번째 지표 항목은 성인지 예산제 인식확산으로 범주화하여 공무원 교육 만족도(제2호) 및 주민참여교육 만족도(제3호)를 점검하고 있음. 세번째 항목은 제도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및 재정집행률(제6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제7호)임

1) 보고서의 해당 내용 전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2020 회계연도(결산기준) 제주도 성인지 예산은 총 238개 사업 수에 1,453억원이며, 이는 2019년(사업수 274개, 예산액 1,985억원)대비 사업비 기준 △26.8% 감소한 것임.
- 회계별 사업 내용: 일반회계는 사업수 231개(예산액 1,318억원), 기타특별회계 사업수 3개(예산액 121억원), 기금 사업수 4개(14억원)
- 대상 사업별에 따른 성인지 예산 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9개 484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83개 926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6개 44억원으로 구성됨.
-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성인지 예산 사업의 비중은 사회복지 43.7%(635억원), 환경보호 30.6%(4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5억원(7.9%), 일반공공행정 83억원(5.7%) 등으로 구성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재정관리보고서에 제시된 성인지 예산제 운영현황 및 분석지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2022재정관리보고서 내용 분석

지표 항목	세부 지표	보고내용
1. 성인지 예산 편성 내실화		
성과목표와 정책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 작성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와 정책세부사업 연계성 제시내용 없음 - 2021년 제주는 259개 사업에 1,721억원의 성인지 예산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사업수는 21건 증가, 결산액은 268억원 증가한 수준임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부문별,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볼 때, 사회복지 분야가 688억원(4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가 518억원(30.1%)으로 큰 비중을 보임 - 성인지 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본청이 656억(38.1%), 도본청 444억(25.8%), 서귀포시본청 444억(25.8%)의 비중을 나타냄 		
대상사업별 사업유형별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성인지 예산 1,721억원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58.9%인 1,01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39.5%인 680억원, 나머지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28억원이 집행됨 -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사업수와 예산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대부분의 성인지 예산 사업을 포괄함에 따라자치단체 특화사업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성인지 예산제 인식 확산		
공무원 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제 관련 공무원 교육은 매년 8월경 예산담당자 집합교육 시에 1시간 가량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021년은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하여 교육이 시행되지 못함(작성기준 교육은 서면으로 대체 실시함) - 만족도에 대한 언급 없음 		
주민참여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실적 없음 - 추진실적 없음에 대한 사유 및 만족도에 대한 언급 없음 		
3. 성인지 예산제 성과		
성과목표 달성을 및 재정집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성과목표 321개에서 227개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을 70.72%를 기록함 -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성과목표율이 54.4%로 급감하였으며, 2021년은 어느정도 목표달성을 회복한 수준임 - 2021년 성인지 예산 재정집행률은 96.64%로 나타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내용 없음 		

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p208~p215에서 요약 정리

- 재정관리보고서의 성인지 예산 관련 내용은 이를 통해 참조하고자 하는 주요 분석결과가 누락되어 있음.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조례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분석적 결과 제시가 부족함
- 또 재정관리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정책제언 항목에서는 성인지 예산 관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떤 제언이나 평가도 실리지 않았음. 즉 재정 환류를 위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임. 이는 조례 제8조의 이행이 부분적이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 재정관리보고서에 담는 성인지 예산 관련 내용은 보다 내실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조례 제9조 성인지 예산제지원 센터

-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는 성인지 예·결산 분석 및 평가와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운영, 그리고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도 출연 연구기관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재의 규정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의 기능을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
- 2022년 10월 현재까지 설치(지정)한 바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임. 향후,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보완하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분석/평가) 지원 및 품질 제고

- 제주자치도 조례에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제6조에서 "...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판단하는지는 아래의 분석 및 평가 항목, 2021년 성인지 예산제도운영 성과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조례17조 포상 조문은 사업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의조항이고, 2022년 10월 현재까지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성평등 성과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제주자치도 조례에서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0조~제15조)에 해당하는 조문임. 해당 항목은 강행 조항임에도 2022년 10월 현재까지 구성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조례 제16조의 추진상황 공개는 엑셀파일로 각 대상사업의 수행 및 집행현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의 재정정보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음

5) 조례이행 성과 종합 및 향후 조례 개정에 반영할 사항

가) 조례이행 성과 종합

- 제주자치도 조례의 이행사항을 성인지 예산제 운영 단계별 개선요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점검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음
 - 성인지 예산제 추진체계 및 환류체계 강화의 영역으로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이행현황을 검토하였음. 제8조에 해당하는 분석평가 일부와 재정관리 보고서에 반영이 이행되어 부분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분석내용 충실화에 해당하는 조례 조문인 제6조와 제17조를 기준으로 이행현황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이행되었다는 보고사항을 확인함
 - 조례 제3조와 제10조, 제16조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추진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같은 핵심요소의 이행 등에서 지체되고 있음

<표 7> 조례의 조문 이행 현황평가

개선요구 영역	조	조문명칭	강행규정 여부	이행여부
전 영역/ 정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노력하여야	측정불가
추진 및 환류체계 강화	제4조 제5조 제8조	운영원칙 운영계획 수립 분석 및 평가	강행 강행 강행	미이행 미이행 부분이행
분석내용 충실화/추진체계 강화	제9조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임의	미이행
분석내용 충실화	제6조 제17조	공무원 교육 포상	강행 임의	미이행 미이행
거버넌스구조 활성화	제7조 제10조 제16조	주민참여 및 교육 성인지 예산 위원회 추진상황 공개	노력하여야 둔다 (강행)	미이행 미이행 이행

- 나) 향후 조례개정에 반영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의 기능 보완과 설치구성 의무화
 - 시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차년도 예산과정에 반영 여부 및 정보공개 방법 강화
 - 중점관리사업 개념 도입
 - 제주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제 발전을 위한 정책실험공간 확보

4. 의회 심의 현황과 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방안

가. 제11대 및 제12대 제주도의회 구성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성비
 - 제11대 총 43명(47명)²⁾ 중 여성은 8명으로 18.6.0%(17.0%)
 - 제12대 총 45명 중 여성은 8명으로 17.8%

제11대	2008-07-01 2011-06-30	<p>○ 2010. 6. 13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 도의원 33개 선거구 33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1개 선거구 5명</p> <p>○ 2010. 7. 1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p>
제12대	2022-07-01	<p>○ 2022. 6. 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 도의원 33개 선거구 33명, 비례대표 9명, 교육의원 5개 선거구 5명</p> <p>○ 2022. 7. 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p>

출처: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개>의회연혁. 2022.10.31.

나. 제11대 도의회 성인지 예산제 발언 현황 분석

1) 전자 회의록 검색 결과

- 제11대 도의회 활동기간 중 ‘성인지’로 발언이 검색된 회의는 총 119개 회의임.
이 중 ‘성인지’가 포함된 성주류화 전략 관련 용어로 사용된 경우(30개), 전문위

2) 제11대 의원 정수는 홈페이지 표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공식 구성원은 43명이나, 전체 의원 정보는 47명에 대해 공개하고 있어, 이 발표문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사용함

원 검토보고 등 공무원 발언 회의(16개)는 음소 구분 동질성으로 다른 의미의 단어가 검색된 경우(11개), 기타 사업 심사과정에 ‘성인지’ 용어 사용 회의(3개)를 제외한 59개 회의가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실질적 발언이 있었던 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성인지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발언이 있었던 회의는 전체 59개 회의임. 이 중 단순히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예산’을 발언한 「단순용어언급」 사례는 11개 회의, 「사업심사」는 14개 회의, 조례제정 및 제도운영을 위한 역할분담에 관련한 「추진체계정비」에 해당하는 발언은 12개 회의에서 나타났음, 「제도운영 및 성과점검」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던 회의가 22개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표 8> 제11대 도의회 회의록 중 ‘성인지’로 검색된 회의 구분

구분	구분	회의 개수
‘성인지’로 단어 검색 결과 인출된 회의		119
의원 심사발언 분석에서 제외한 회의		60
	성주류화 전략 관련 용어로 사용	30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공무원 발언 회의	16
	다른 의미의 단어	11
	사업심사 과정에 ‘성인지’ 용어 사용	3
의원 심사발언 분석에 포함한 회의		59
	단순용어언급	11
	사업심사	14
	추진체계정비	12
	제도운영 및 성과점검	22

2) 발언 의원 및 회의 종류

- 전체 의원들 중 23명의 의원이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의원 47명 중 약 50%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 심사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됨. 한 차례 이상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 여성의원은 7명, 남성의원은 16명임
- 여성의원들이 발언한 회의 개수가 35개이고, 남성의원이 발언한 회의 개수가 24개로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심사 발언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음. 여성의원 중 가장 많은 회의에서 발언이 나타나는 의원은 김경미 의원(9개 회의), 강성의 의원(8개 회의), 한영신 의원(8개 회의), 고은실 의원(7개 회의) 순임. 반면에 남성의원의 경우, 가장 많은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

의원은 고현수 의원(5개 회의), 강철남 의원(4개), 흥명환 의원(3개 회의) 순임

-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및 성인지 예·결산서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한 의원들 중 가장 다수의 발언 기록이 있는 여성 의원들(김경미 의원, 강성의 의원)과 관련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한 의원(강철남 의원)이 제12대 의회에 재선되어 활동하게 되었음. 이는 제주도의회가 다른 어떤 지역 의회보다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튼튼한 기반과 성장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됨
- 분석 대상이 된 각 회의에는 대부분 1~2명의 의원이 관련 발언을 하고, 여러 의원이 동시에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집중하여 발언한 경우는 거의 없음. 2명의 의원이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을 한 회의는 3개 나타남
- 지방의회 회의를 주된 목적, 임무 또는 기능 중심으로 구분하여, 임시회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로 나누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회의들 59개를 이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임시회는 15개, 정례회는 40개, 행정사무감사는 4개 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함. 정례회는 성인지 예산서를 심사하는 2차 정례회, 성인지 결산서를 심사하는 1차정례회에서 동일하게 20개 회의 수가 검색되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중 어느 한쪽만 집중하여 심의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음
- 특히 성인지 결산서를 대상으로 심사한 발언이 성인지 예산서를 대상으로 심사한 발언보다 임기 후반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치 상으로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성과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음
- 임시회 시기의 관련 발언은 주로 추경 예산안 심사이거나, 연도별 주요 업무보고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회의에서 나타남

<표 9> 성인지 예·결산 관련 의원발언 회의 구분: 연도별, 회의별

회의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합계
임시회	3	7	1	3	1	15
정례회	제1차	6	4	4	6	-
	제2차	7	5	4	4	-
행정사무감사	-	-	1	3	-	4
총합계	16	16	10	16	1	59

- 한편, 제주 도의회 구성 상임위원회 별로 구분하여 각 회의의 분포를 검토할 때, 교육위원회(14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개)에서 가장 많은 회의가 성인지

예산을 다루었음. 그 다음으로 많은 회의에서 발언을 한 의원이 있었던 회의가 많은 위원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11개), 행정자치위원회(9개) 순임. 의회운영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 각 2개의 회의에서 의원 발언이 있었음. 각 상임위원회 중 의원 발언 회의가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해당 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결산서의 규모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0> 성인지 예·결산 관련 의원발언 회의 구분 :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별	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합계
		제1차	제2차		
교육위원회	3	4	4	3	14
농수축경제위원회	1	-	1	-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0	0	0	0	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4	4	-	11
본회의	3	1	1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6	4	-	14
의회운영위원회	-	1	1	-	2
행정자치위원회	1	4	3	1	9
환경도시위원회	-	-	2	-	2
총합계	15	20	20	4	59

3) 발언 유형 범주화

- 각 회의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들은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음. 우선 발언 주제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단어만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친 발언의 경우는 「단순용어사업」의 범주로 포함했음. 또 대상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발언은 「사업심사」로, 제도 운영 절차나 최종적 성과를 확인 점검하는 발언은 「제도운영 및 성과점검」으로 구분 하였음. 추진체계 및 조직강화 현황 등의 내용을 지적하는 발언은 「추진체계정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음
- 발언의 유형에서 단순 용어사업은 11개 회의에서, 사업심사를 위한 발언은 12차례 회의에서 나타났음. 또 제도운영 및 성과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발언은 22개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추진체계를 강화하거나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의 지적은 12개 회의에서 확인되었음
- 이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2개의 회의 중 각 5개의 회의에서 사업에 대한 심사 발언과 제도운영 및 성과점검에 해당하는 발언이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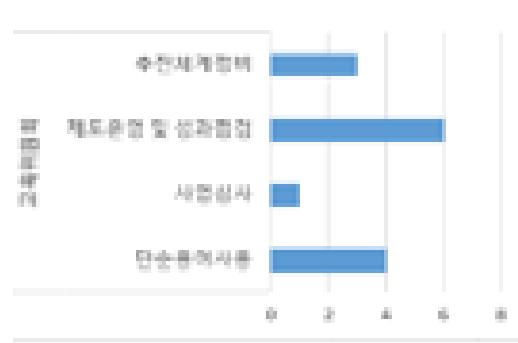
<표 11> 성인지 예·결산 관련 의원발언 회의의 발언유형

위원회별 발언유형	단순 용어사용	사업심사	제도운영 및 성과점검	추진체계 정비	총합계
교육	4	1	6	3	14
농수축경제	1	-	1	-	2
보건복지안전	3	3	4	1	11
본회의	1	-	-	4	5
예결위	2	5	5	2	14
운영위	-	2	-	-	2
행정자치위	-	2	5	2	9
환경도시위	-	1	1	-	2
총합계	11	14	22	12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유형]



[교육위원회 발언유형]



4) 발언유형별 내용 분석

- 제11대 제주도의회 활동 기간 중 의원들이 지적한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 내용을 발언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한 발언은 12개 회의에서 나타났는데, 본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2019년에 2개, 2021년에 2개 회의가 확인됨
 -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한 발언의 내용과 양에서, 조례 제정 전후를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주요 내용은 담당 공무원들의 제도수행 의지와 자세에 적극성을 촉구하는 내용임
- 2019년 7월에 도 조례가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2021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에 관련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를 심사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주요 이유가 될 것임
- 한편 도 교육청 조례는 2021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시기는 2022년 회계년도로 정하고 있어, 추진체계의 보강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심사 내용으로 조례상에 명시한 성인지 예산위원회 구성 등의 이행 현황 심의는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여건이었을 것으로 추론됨

- 「제도운영 및 성과 점검」으로 구분되는 발언은 22개 회의에서 나타나, 전체 발언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발언 내용들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규모와 영역의 증감에 관한 사항과 선정의 적절성,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 성평등 목표 수립 체계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대상사업 분석의 타당성 확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집행률에 대한 점검 등이 포괄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음 (해당 회의명, 발언 의원 및 요지 별첨)
- 「사업심사」에 해당하는 발언은 14건이 있었음. 2018년에 6개 회의, 2019년에 4개 회의, 2020년과 2021년에 각 2개 회의로 나타남. 모두 정례회이고, 1차 정례회(성인지 결산 심사) 8개, 2차 정례회(성인지 예산 심사) 6개임. 위원회별로는 예결위 5건, 보건복지안전위 3건, 의회운영위 2건, 행정자치위 2건, 교육위, 환경도시위 각 1건 씩으로 구분됨
 - 사업심사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모두 정례회에서 나타난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심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함. 2018년과 2019년에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가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결산서 심사 단계에서 예산서 심사보다 비교적 많은 관심을 나타낸 점도 확인되었음
 - 상임위원회 중 복지안전위에서 제시된 대상과제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 건도 의원발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사실임
 -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을 정도, 구체적 대상과제 포함 제안, 미흡한 분석 내용, 예·결산서에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 문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문제 등,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임

<표 12> 성인지 예·결산 관련 의원발언 회의 중 「사업심사」 지적내용

연번	연도	위원회	사업명	지적내용
1	2018년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	교육인프라 구축 성과목표 달성 보고 신뢰도 낮음
2	2018년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	배움터 지킴이 사업 성과목표 개선률 낮음. 대상과제 확대 노력
3	2018년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	대중교통 지원사업, 버스 시설물 운영관리 대상사업 적절성 고려할 문제
4	2018년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	도민안전공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도록 제안
5	2018년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	간판디자인학교 운영사업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의견(과다계상 문제)과 함께 포함제안 사업과 제외 대상사업 예시 제안
6	2018년	제2차정례회	교육	여학생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설명에 여학생 선호종목 특성하는 것 부적합함을 지적
7	2019년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	대중교통지원사업 젠더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
8	2019년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	108쪽, 112쪽 등의 성별격차원인분석 분석내용 빈칸, 작성문구에 문제점
9	2019년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	미디어홍보사업 (의정소식발간 사업) 분석은 의정소식발간사업 예산액은 큰 단위로 제시하여 총액 과다계상 문제
10	2019년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시민기자단 운영 성과지표 설정을 성인지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제안(성평등교육 실시)
11	2020년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의 대상사업 2개 성과목표 달성된 상태일 다른 지표를 찾든지, 다른 사업을 선정하여 성평등 성과관리 해나갈 필요
12	2020년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	교육청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41개 '거의 대부분'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지표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13	2021년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	공보관실의 조설매체운영 사업 성인지 예산사업이므로 제도취지와 맞게 운영했는지 검토하는 과정 미흡
14	2021년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성과목표치 설정 타당성 결여 지적

다.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심의 방향 및 검토방안

1) 심사 방향 제안에 참고가 되는 쟁점 사례

- 성인지 예산서 심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거나 다루어진 내용은 대상사업 적절성 논란일 것임.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가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간접적’인 것은 어디까지 정보를 연결하여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대상사업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 하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두번째로 성인지 예산서의 분석내용에 대한 지적으로, 제시된 정보에 대한 제한된 해석을 기반으로 비판적 지적을 하는 경우임. 사례로 제시된 것처럼 성별수혜 분석이 단순한 수치와 인적통계로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관련 통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발하고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기대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예산부서에서는 지역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에 따라 보고서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인지통계 개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 을 기울여야 함
- 세번째 심사사례 유형은 분석대상이 된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대상사업범 주를 설정하여 대상사업 규모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는 예산사업 구조에 서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개별사업이 있는데, 이 중 분석대상으로 하 나의 개별사업을 정해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도, 세부사업 전체 예산규모를 통으로 산입하는 시스템의 문제임. 즉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구조를 세부사업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임. 이러한 왜곡이 지적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 상의 전체 규모를 어떻게 분석적으로 보고하고 종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 또는 외부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3> 심사방향 제안에 참고가 될 사례 발언 요지

쟁점	회의명	발언요지
대상사업 적절성 논란		
	제3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8. 화요일)	<p>○*** 위원(생략)....예산 증가내역을 한번 찾아 봤더니 버스 시설물 운영관리, 대중교통 지원 사업.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생략.....승차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꼭 여성의 안전만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승차대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p>
분석내용 해석에 대한 제한적 접근		
	제373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9.06.11. 화요일)	<p>○ *** 위원(생략)... 성인지 결산서 116쪽을 보면 '대중교통 지원' 해서 사업 목적은 장애인과 같은 접근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인지 관점에서는 여성의 승차 비율, 남성의 승차</p>

		비율을 적시했습니다. 이것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액세스, 불편 해소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도민의 승차율하고 이것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고요.
대상사업 규모 왜곡으로 해석되는 문제		
		제37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6. 화요일)
		<p>○***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제주의정소식 발간과 의정 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생략)...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사업예산서에는 7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성인지 예산서에는 2억 8052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p> <p>○사무처장*** 미디어 홍보사업에 의정소식 발간하고, 우편 발송료 2600만 원으로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2억 8000만 원으로 봐야 됩니다. 미디어홍보사업 전체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봐야 될 겁니다.</p>

2) 제도 발전의 확장적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심사 사례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사 발언들 중에서 ‘성인지’가 포함된 발언이 있는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성인지 예산서나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나 성인지 결산서 심사라는 정해진 틀을 넘어서 확장된 형태의 성인지 예산제도 가능하고,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러한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른 지역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됨
- 아래의 표에 제시한 심사사례는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 결산 심사 이외의 발언들인데, 이 중 성인지 예산제의 확장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사례들을 정리해놓은 것임.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심사 결과를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추적하고, 제주 자치도 성인지 예산제의 특징적이고 고유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기획되기 바람

<표 14> 제도 발전 및 확장 가능성 제시 심사 사례

회의명	발언주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3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7.18. 수요일)		
	(고태순 의원) 의회청사 공간을 성인지적으로 재구성, 보강 필요성에 대해 제안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의 관심과 시각에

		서 성인지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시도. 이것이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 있음
2018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23. 화요일)		
		(고은실 의원) 탈라교육원 사업 중, 교사 연수 내용이나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성평등 교육을 포함시키는지 확인 발언
		성평등교육과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 교정차원의 발언을 시도함. 그 자체로도 성인지적 심사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 평가에 여기서 제시한 사업들의 사례처럼 여러 사업이지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달성성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고 고민되어야 함
제365회 제2차[폐회중] 4·3특별위원회(2018.11.14. 수요일)		
		(강성의 의원) 4.3 피해자 유족지원 대상 범주에 며느리까지는 포함되는 데, 사위는 포함이 안되고 있는 현황, 범주 확장 필요성 제안
		후속처리사항 검토와, 이러한 사업개선내용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로 포함될 수 있는 방법 고민 필요함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05. 금요일)		
		(김경미 의원) 추경예산편성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 질문
		추경편성 시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은 성인지 결산서의 예산액이 성인지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음. 이를 보완하는 방법 찾을 필요 있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제언

-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 그 자체의 이행 성과가 아니라, 지역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함.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행 제도의 형식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안을 모색해야 함
-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양질의 정보를 담도록 해야 하고, 성인지 결산서는 해당 예산안의 성평등 효과를 기준으로 한 실적이 정확하게 나타난 성인지적 집행결과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또 이러한 보고서류(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활용하여 차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지고 이용 사례가 확대되어야 함

-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 단순히 보고서류가 양질의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실있는 심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일도 필요함. 실질적 성평등 효과를 측정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가 상호 지지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성인지 예·결산서를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고, 이것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이러한 발전 방향 및 요구들을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종합 정리하였음

가. 실무 추진체계 전문역량강화 및 내·외부 협업체계 구축 강화

- 실무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공식성 강화
 - 성인지 예산제 운영과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업무 특성 상, 전문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개방형 전문직위제 형태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6급 상당의 전문가를 실무담당자로 배치한 지역 사례들을 참조하여, 도본청과 양 행정시 단위에 성인지 예산 실무담당자 전문 인력 확대 배치를 도모할 수 있음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 공식화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함, 담당자 워크숍 및 업무매뉴얼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부서 간 기능 정비 및 내부 협업체계 구축
 - 성인지 예산제 실무 추진체계는 예산부서, 결산부서, 성평등전담부서, 기타 각 부서로 구분하여 각 부서별 실무 역할을 나눌 수 있음.
 - 예산부서는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주무부서임. 성인지 예산 편성(대상사업 선정의 최종주체)과 조례상에 명시된 제도 운영 전반의 필요한 조치 수행, 성인지 예산위원회 등 협의조정 기구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함. 또, 결산부서에서는 성인지 결산서가 예산서와 수합체계와 같은 구조로 수합되도록 지원하며,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검사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양성평등정책부서는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목표 수립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연계 추진을 위한 지원, 성인지통계 및 성인지교육 운영, 양성평등담

당관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임. 각 부서의 양성평등담당관은 부서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사업 발굴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함

- 이처럼 지자체 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조직은 세 개의 단위부서 간 협업구조가 원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는 성평등정책관과 예산담당관(회계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수행은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업무를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서 간 업무연계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가 구축되고 정규화할 필요가 있음 이 협업체계에는 부서업무를 지원하는 성인지 예산지원센터 등 전문가의 결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성인지 예산 위원회를 주축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의 젠더거버넌스 운영

- 현행 조례에서는 성인지 예산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매우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고,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도 아닌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와 기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제도에 관여되는 사람들을 더 확대해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논의에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요 추진단계별 협업체계 또는 네트워크가 구축·운영되어야 함
- 현재 제주지역 성주류화 거버넌스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강경숙, 신승배, 2020).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위원회가 결합하는 제주지역 젠더거버넌스 운영과 이에 대한 행정의 책무성 강화, 도민 주도의 거버넌스 권한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의회, 언론,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 등 참여 주체와 정책 영역을 확장한 구조로 제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선행될 필요가 있음

나. 의회 심의 강화 및 심사지원체계 확대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임. 정책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정책도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정교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는 동시에 그 정책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게 마련임

-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사업들을 성인지적 정보를 활용하여 성평등 영향 및 효과를 드러내도록 설계한 서류로 개발된 것임. 그러므로 이 정보를 낼 것 그대로 의회에서 심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데 활용하기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 판단일 것임. 더구나 해당 보고서(정책도구)를 통한 정보의 습득은 물론이고 활용 방식, 즉 심의나 차년도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 낯선 것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를 분석한 정보를 쉽고 활용하기 좋게 가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당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성인지 예·결산서 심의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민참여의 방법과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논의구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음
- 의회의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은 심사를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먼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 또한 그 기능에 의회지원을 위한 활동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함
- 또 다른 단계에서 의회 심사지원체계로는 성인지 결산심사를 위한 전문가가 결산검사단계에 결합하도록 하는 것임. 지자체 예산과정에는 결산서에 부속된 각종 서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결산검사라는 단계를 두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단계의 목적을 회계나 세무 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한 수준이나, 2021년 충북도가 처음으로 결산검사 보고서에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했으며(검사위원 중 1인을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로 위촉함), 2022년에는 충남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축적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의회 내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 중 젠더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공식 보직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것임.
- 그리고, 시민참여의 방법을 확대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논의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평등정책 및 성인지적 의회운영을 지지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시민참여형으로 의회 내에 구축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음. 이러

한 방안들은 대체로 실험적 수준에서 시도되었거나 준비를 위한 논의차원의 수준이므로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제주자치도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대해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

다.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조례를 제정하여, 환류체계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문을 성립시킨 지역임. 그럼에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연구기관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고,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제외되어 있거나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지점임. 그러므로 다음의 각 항목들을 조례 개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의 기능 보완과 설치구성 의무화
 - 시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차년도 예산과정에 반영 여부 및 정보공개 방법 강화
 - 중점관리사업 개념 도입
 - 제주자치도의 성인지 예산제 발전을 위한 정책실험공간 확보

라. 덧붙이는 말

-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서나 성인지 결산서 자체만으로 예산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그러한 측면에서 자자체 예산과정에 관여되는 모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상호 견인하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함께 해야 할 것임. 현재 예산과정에는 행정, 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에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대체로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어떻게 권한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속에 제도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러 잠재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기도 함
- 제주 포럼에서 향후 이러한 방향의 논의를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와 함께, 이 발표를 맺는 말로, 지난 11대 의회심사에서 발언된 내용 중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함. 어쩌면 이 답변의 맥락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임

“행정이..... 아주 느리게, 느릿하게 개선하면서 나가는 조직이거든요. 항공모함 같은 건데, 쾌속정은 짹 달리면 되는데 항공모함은 천천히 갑니다. 느릿느릿 가지만 개선은 됩니다. 의회에서 자꾸 지적해 주시고, 누적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실무진들, 우리 부서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늘 보고드려야 되고, 뭘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냐라는 관점부터 왜 이렇게 늦냐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되고, 그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질책 해 나가고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출처 : 제11대 제39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 06 . 22.(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참고문헌

- 강경숙·신승배(202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김희경·선민정(2019), 「지방의회 성인지예·결산 심사 안내서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나성은·정유진(2020).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재경·서진솔(2021),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서울여성가족재단
- 임혜경(2020), 「경기도 성인지예결산제 실행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2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open/finance/>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uncil.jeju.kr/>

• 발표 •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젠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고 보 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발표문 2]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 젠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¹⁾

고 보 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1.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갖는 의미

-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채택된 이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같은 성주류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비판이 국내 선도적인 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용되었음.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도입과 함께 성주류화 전략의 한국적 이해와 적용, 한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은 한국여성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2002년 국회 본회의에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결의안’ 의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성별 영향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이후 2003년부터는 국회 여성위원회와 운영위에서 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접근에 대한 질의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결과, 2006년에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인지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가재정법」을 제정,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예산제도로 자리매김함

1) 본 발표문은 광주광역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성과 분석(2022.11.발간예정,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연구(2021, 광주여성가족재단) 보고서를 근간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근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며, d-brain 시스템을 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따르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방재정에 갖는 의미는 첫째, 세금 부과 및 세금 사용의 재정활동 전반에 남성과 여성의 재정 형평성 구현의 확장, 둘째, 지방재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확대시켜 동태적이고 주민 밀착적인 예산운영을 유도,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지방재정 제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잠재력,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지방예산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과 함께 제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제도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와의 연계방안을 위한 연구(황정임 외 2012; 황정임 외 2013; 황정임 외 2014)들이 수행됨.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달성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됨.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역 성평등 목표 수립 방안, 성평등 목표에 따른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대한 연구(박수범 외, 2016)들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각 지자체가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적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성평등지수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정가원 외, 201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분석·평가(박수범 외, 2019; 손제희, 2020)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자체별로 수행되고 있음
- 광주광역시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환류방안(강현아 외, 2011; 강현아 외, 2012c),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연계방안(강현아 외. 2012a), 성 주류화 정책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강현아 외. 2012b; 강현아 외. 2013) 연구 등이 수행되었고, 이후 제도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성인지 예산 정책개선 모니터링,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성과 및 사례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됨(노채영 외, 2016; 노채영 외, 2019).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제도의 확장을 위한 성인지적 시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안 연구,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법 연구,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연구 등을 수행함(노채영 외, 2020; 노채영 외, 2020, 고보혜 외, 2021)

- 특히 「성별영향평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가 매년 발간되면서 제도 추진 초기 양적 성장에 맞춰진 초점이 제도의 질적 제고로 옮겨가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 또한 예산의 규모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 변화시키는 핵심 사업 위주의 대상과제 선정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동안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양적 성과는 제고되었으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모호, 부적절한 성과지표, 미흡한 성과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광주광역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행정 차원에서의 추진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젠더전문가, 기관 담당자, 일반시민 등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강조하고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2.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정책의 주요 추진 과정

- 본 발표문에서는 그동안의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던 법제도 구축 및 운영, 주체 및 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함
- 2007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는 제7조의 정책의 분석·평가 등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밖에도 제8조 (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제13조(남녀평등 의식의 제고)에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의 근거를 마련함. 이후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성별 통계, 여성참여 확대, 성인지 예산, 성인지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 과정을 거쳤음
- 2007년에 이르러서야 광주광역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타 지자체에 비해 늦은 조례 제정이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정뿐만 아니라 성인지 통계나 성인지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당시에는 광주광역시 성주류화정책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는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강현아 외, 2012)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제정('12.3.16. 시행)된 이후 광주광역시는 2012년 5월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5개 자치구도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2012년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고려사항,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결과의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이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평등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2013년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하였고,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규정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과 관련한 내용만을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포함시킴
- 2014년 개정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는 광주광역시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19년에는 자치법규명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개정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변화 과정을 겪음
- 2016년 전부개정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광주광역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와 함께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으로서 성평등 정책 촉진, 성평등 참여,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개편함. 성평등 정책 촉진을 위해 제16조(성 주류화 조치),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제18조(성인지 예산), 제19조(성인지 통계), 제20조(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정책의 주요 제도와 내용을 규정하여, 현행 성주류화정책과 관련한 제도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에 체계화하게 되기에 이르렀음
-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성인지 예·결산과 관련한 제도들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연계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 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019년에는 시 조직개편과 함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기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이 추진하던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음

- 광주광역시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중점관리사업의 선정이나 관리에 있어 성평등목표를 수립하는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총괄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예산부서,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젠더 거버넌스가 협업하여 성인지 예산·결산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는 시 재정 운영을 성인지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전문가와 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료들의 기술적 혹은 기계적 접근의 한계를 보안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있음(차인순, 2019)

[표 1] 광주광역시 성주류화정책의 제도화 과정

연도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관련 규정	비고
2007	광주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 명시	제4조 (시민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모든 시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 2007 -01-01
			제7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1주이상의 전문교육 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2주이상의 모든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2	광주광역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 이념)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제정) 2012 -05-15

연도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관련 규정	비고
			제10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제12조(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3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4조(분석평가 교육)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 ·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 제18조(시행규칙)	
2013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개정 -성별영향평가의 내용은 삭제, 성인지통계, 성인지 교육 등은 포함	제7조(성인지 통계)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 대상·성별 수혜자 분석·성별영향분석 평가·성인지 예산 편성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통계에서 남녀를 구별하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성평등의식의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부 개정) 2013-04-01
2014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명시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3(위원의 임기) 제15조의4(위원회 운영)	(일부 개정) 2014-06-30
2016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현재의 성주류화정책과 관련한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정비	제16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서 정한다. 제18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전부 개정) 2016-03-01

연도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관련 규정	비고
			<p>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p> <p>제20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교육을 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재) 광주여성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2017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 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점 관리 사업 추진, 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 마련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내실화에 기여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제5조(지침서 등) 제6조(위원회 설치) 제7조(기능) 제8조(구성) 제9조(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분과위원회) 제13조(교육 과정 운영) 제14조(간사) 제15조(수당 등) 제16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17조(업무의 위탁)	(제정) 2017-12-15
2019	광주광역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례명을 개정	제목 개정	(일부 개정) 2019-10-15

3.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가.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성 주류화 정책의 전략인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양성 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 원칙과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작성기준과 제출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2년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시범 작성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기 시작 되었음. 광주광역시는 2017년 12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역의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였음
-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으로,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실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업무 지침서 제작 배포, 사업담당자 대상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고, 세부사업내의 부기사업을 별도 구조화하여 과다계상방지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표 2>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관련 자치법규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주요 내용	제16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 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 평가 개선의견 및 자체개선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p>적극 개발하여야 한다.</p> <p><u>제18조(성인지 예산)</u>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제46조(정책자문 및 사업위탁)</u>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u>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여성가족과장,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어 어느 한 쪽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안을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이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4.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p> <p><u>제6조(지침서 등)</u>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 정책 종합계획과 시행 계획,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p> <p><u>제7조(위원회 설치)</u>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u>제17조(시민 참여 및 지원)</u>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p>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p>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예산제에 반영하도록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시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u>제18조(업무의 위탁)</u>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나. 추진 체계

- 광주광역시는 2015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시 예산부서가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정책부서가 대상사업을 선정해 왔음. 성평등 목표를 예산부서가 수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정책부서가 성평등목표 선정 및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각 사업담당자는 예산서 작성, 취합하며, 예산부서는 예산서 정리, 의회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됨(강현아, 2016). 이후 2021년 광주광역시는 기존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이 여성가족국으로 승격되면서 성별영향평가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성인지예산의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음

○ 추진주체 : 여성가족과, 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센터

- 예산담당관 : 1명(성인지 예산 1)
- 여성가족과 : 2명(양성평등정책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1)
- 회계과 : 1명(성인지결산 1)
- 성별영향평가센터 : 4명(센터장1, 전담연구원3)

○ 추진절차

- 시 여성가족교육국 내 여성가족과와 성인지예·결산 전담연구원 1명이 배치된 성별영향평가센터와 협업하여 세출예산서, 익년도 예산요구액, 사업조서를 근거로 대상사업 선정작업을 진행하며, 젠더 거버넌스 운영으로 대상사업을 확정함.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 지원, 적정한 성인지 예산 분석서 항목 작성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시 예산부서는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규모를 조정하고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함



[그림 1]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다. 광주광역시 성주류화정책 추진 현황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중앙 정부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하여 시행하였고, 2017년 12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배포함.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개정(2017.11.15.)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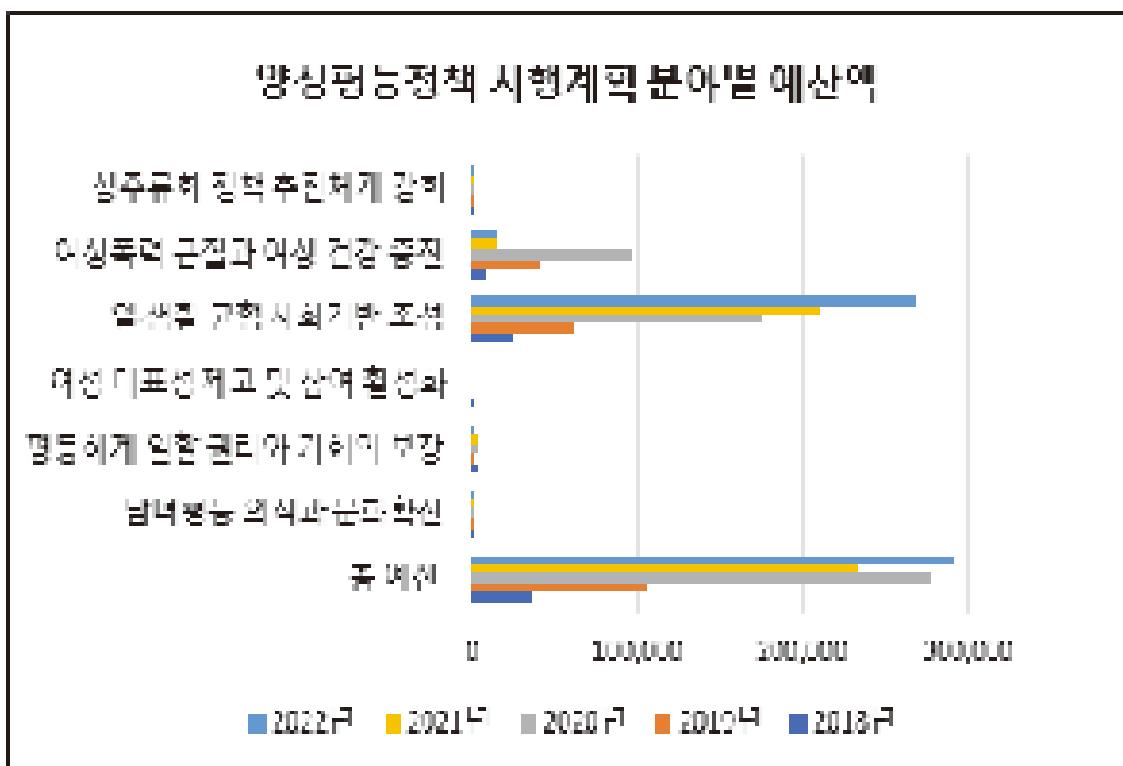
[표 3]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액과 사업수(2018-2022)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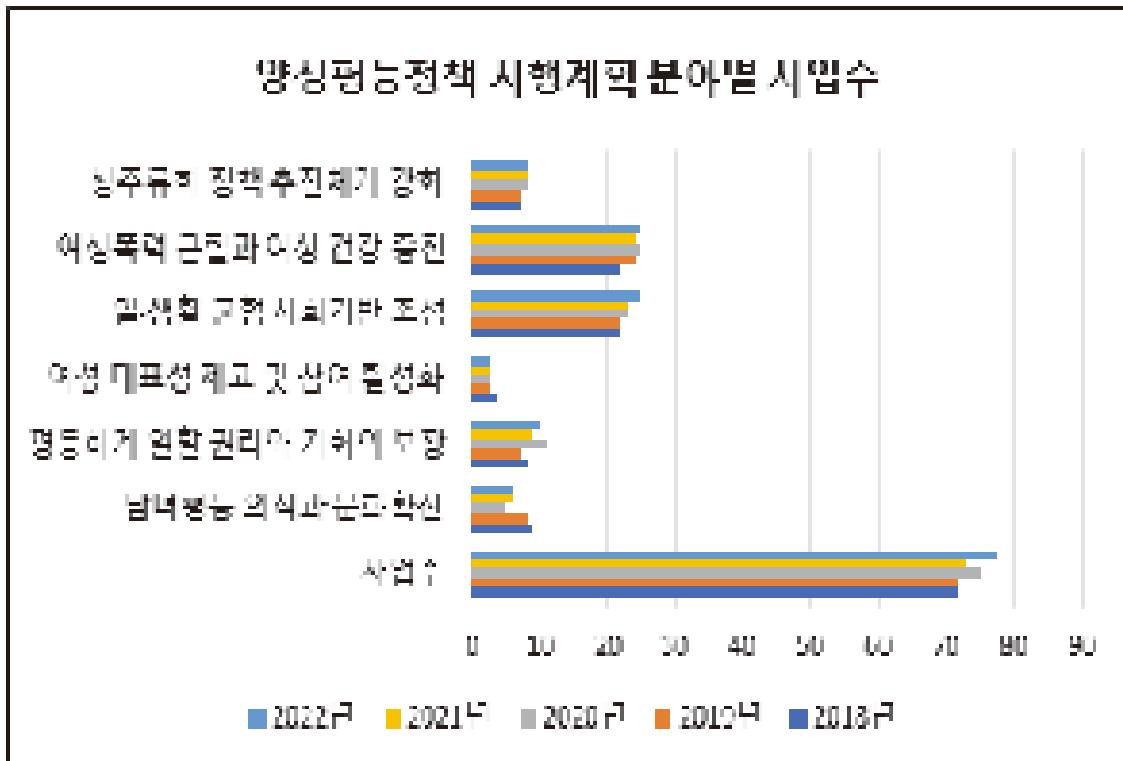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예산 및 사업수	36,952 (72건)	105,262 (72건)	277,778 (75건)	232,719.4 (73건)	291,403 (77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632 (9건)	1,665 (8건)	2,146 (5건)	2,393 (6건)	2,485 (6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2,747 (8건)	1,360 (7건)	3,682 (11건)	3,811 (9건)	4,320 (10건)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50 (4건)	비예산 (3건)	비예산 (3건)	비예산 (3건)	비예산 (3건)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4,135 (22건)	61,723 (22건)	174,695 (23건)	212,028 (23건)	268,461 (25건)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8,959 (22건)	40,067 (24건)	96,573 (25건)	14,262.40 (24건)	15,913 (25건)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329 (7건)	297 (7건)	628 (8건)	225 (8건)	224 (8건)

자료: 광주광역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2018,2019,2020,2021,2022)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상 영역별 예산 수립 내역을 살펴보면,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분야의 예산과 사업수가 확대되었으며,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분야의 예산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분야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



[그림 2]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액(2018-2022)



[그림 3]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사업수(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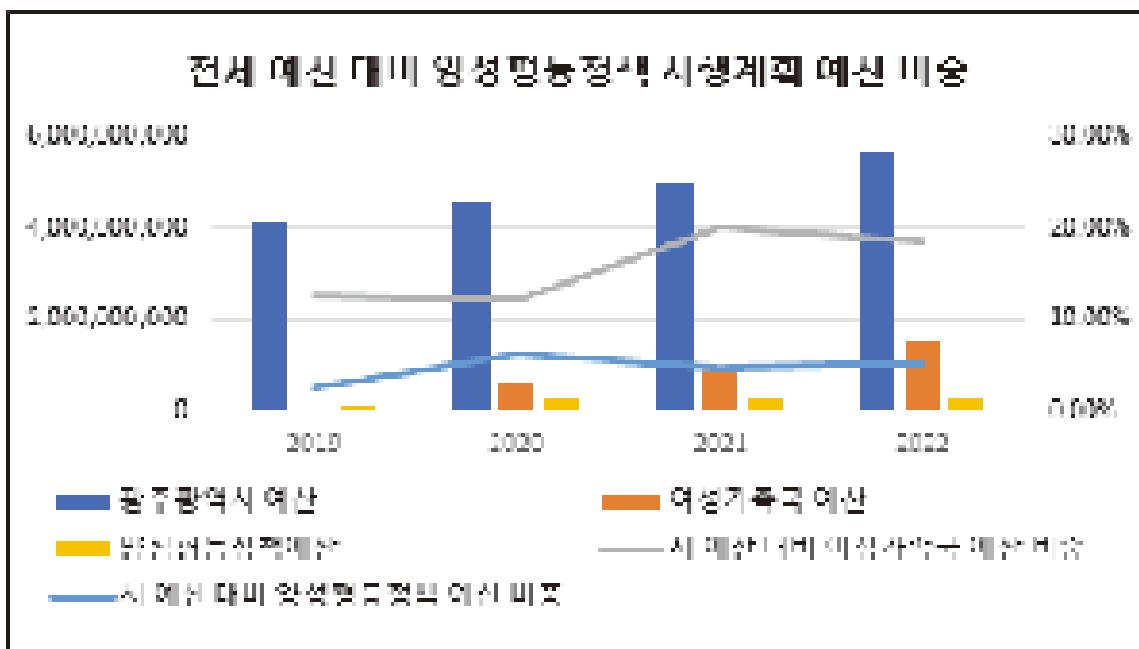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이 여성가족국으로 격상되었고, 여성·가족정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시 예산대비 2020년 12.2%→2021년 18.56%)

[표 4]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 대비 양성평등정책 예산액(2019-2022)

(단위 : 백만원)

연도	광주광역시 예산	여성가족국 예산	시 예산 대비 여성가족국 예산 비중	양성평등정책예산	시 예산 대비 양성평등정책 예산 비중
2019	4,139,292,375	523,807,340,	12.65%	105,262,000	2.54%
2020	4,567,304,557	553,424,630	12.12%	277,778,000	6.08%
2021	4,940,084,563	983,150,801	19.90%	232,719,400	4.71%
2022	5,670,155,328	1,502,275,106	18.56%	291,403,000	5.14%

자료: 박주희(2022). 광주광역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실적 분석²⁾



[그림 4]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 대비 양성평등정책 예산액(2019-2022)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성인지적 정책 역량강화, 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2)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본예산 기준, 광주광역시 2019~202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2019년은 지방비만 기재)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강화 등을 위해, 지역의 성주류화 정책과 연계한 성별 영향평가서, 성인지예·결산서 컨설팅 및 지원이 광주성별 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교육,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을 추진되고 있음. 또한 광주광역시 5개구 모두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모델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여성가족 친화마을사업과 함께 여성친화 도시 코칭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민선 7기 이후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의 업무가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로 전부 이관되어 운영되었으며, 타시도와 비교하여 적은 사업 수 및 예산규모, 주도적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개선하고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시장 직속 부서의 추진체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5] 2022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성주류화정책) 추진사업 총괄표

과제번호	과 제 명	소관부서	예 산 액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합 계	총 77개 사업 (시 자체사업 46개 / 4,767백만원)		291,403	163,313	128,090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확산	: 6개 사업		2,485	1,123	1,362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10개 사업		4,320	2,567	1,753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3개 사업		-	-	-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25개 사업		268,461	154,818	113,643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25개 사업		15,913	4,805	11,108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8개 사업		224	-	224
6-1-[1]-①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여 성 가 족 과	4.5	-	4.5
6-1-[3]-②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광주지역 성평등지수 제고)	여 성 가 족 과	-	-	-
6-1-[3]-②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성인지 통계 생산확대 및 체계적 관리)	스 마 트 도시담당관	3	-	3
6-1-[4]-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여 성 가 족 과	1.5	-	1.5
6-1-[4]-②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추진	여 성 가 족 과	-	-	-
6-2-[1]-①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여 성 가 족 과	5	-	5
6-2-[2]-②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구축)	여 성 가 족 과	60	-	60
6-2-[2]-②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여성친화마을 조성)	여 성 가 족 과	150	-	150

자료: 2022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4.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현황

가.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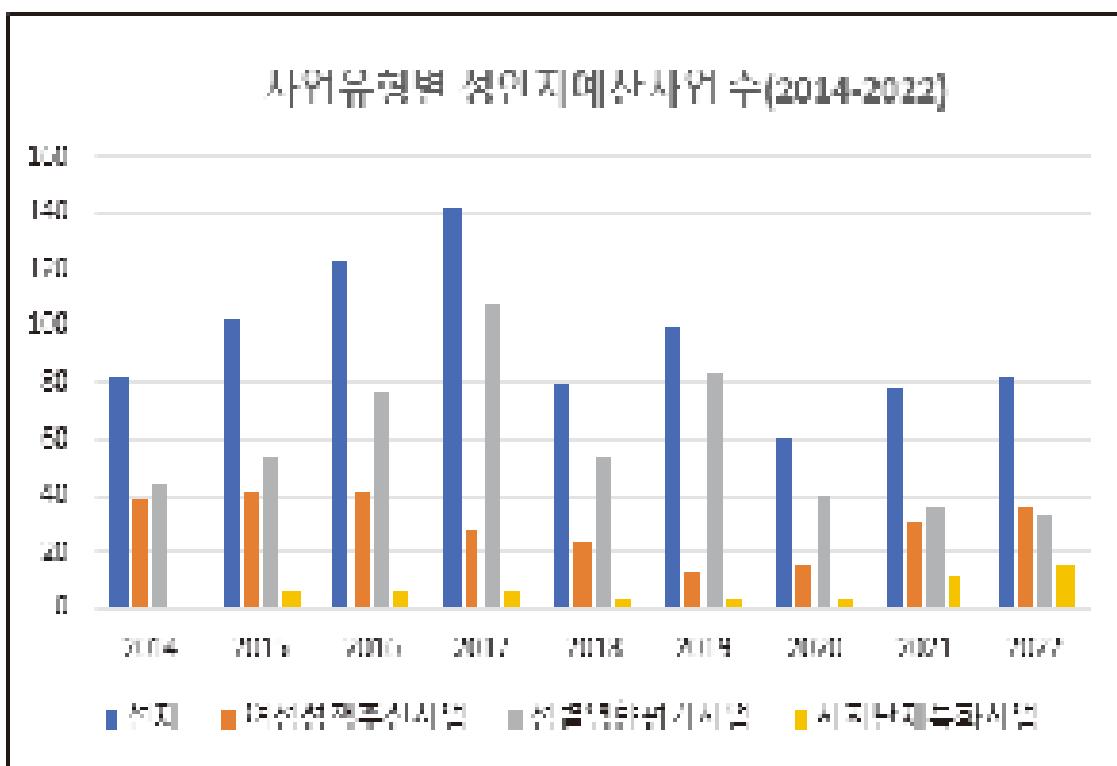
- 성인지 예산사업은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광주광역시는 2014년 83건, 2015년 102건, 2016년 124건, 2017년 142건, 2018년 80건, 2019년 100건, 2020년 60건, 2021년 78건, 2022년 83건을 선정함

[표 6]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현황(2014~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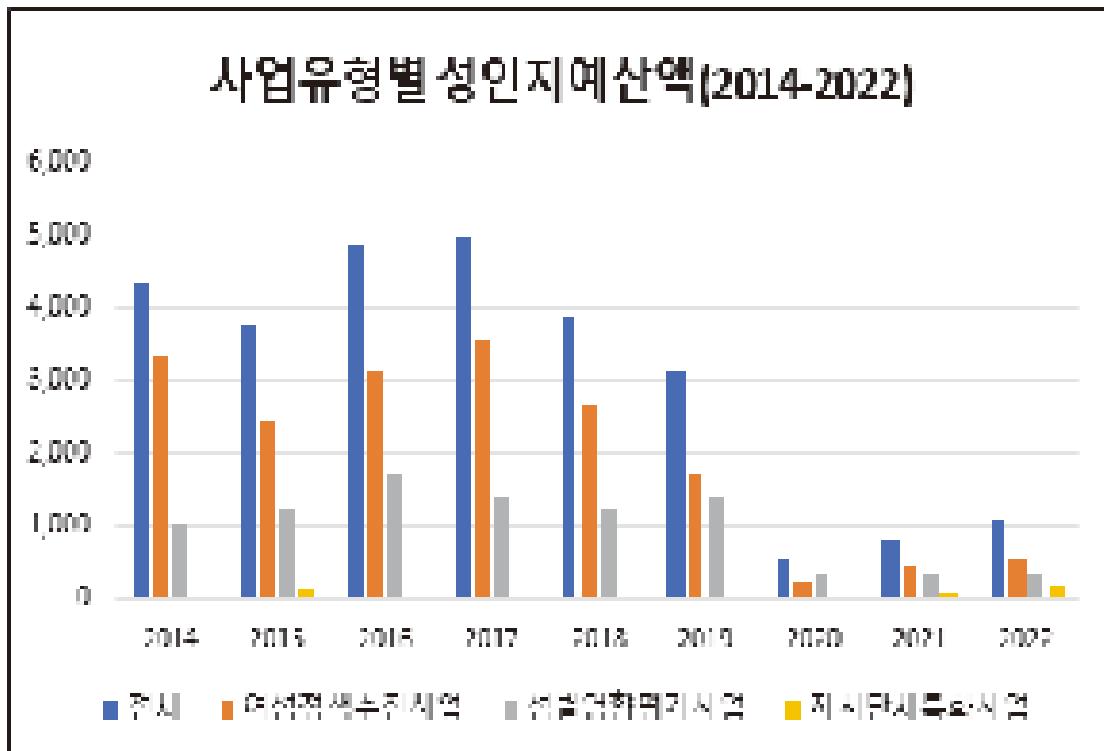
(단위 : 건, 억원)

연도	전체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2014	83	38	45	-
	4,332	3,335	997	-
2015	102	42	54	6
	3,807	2,447	1,243	117
2016	124	42	76	6
	4,886	3,146	1,733	8
2017	142	28	108	6
	5,005	3,571	1,399	3
2018	80	23	54	3
	3,919	2,703	1,208	8
2019	100	13	84	3
	3,147	1,732	1,388	27
2020	60	16	40	4
	572	202	343	28
2021	78	31	36	11
	820	432	328	61
2022	83	35	33	15
	1,067	523	369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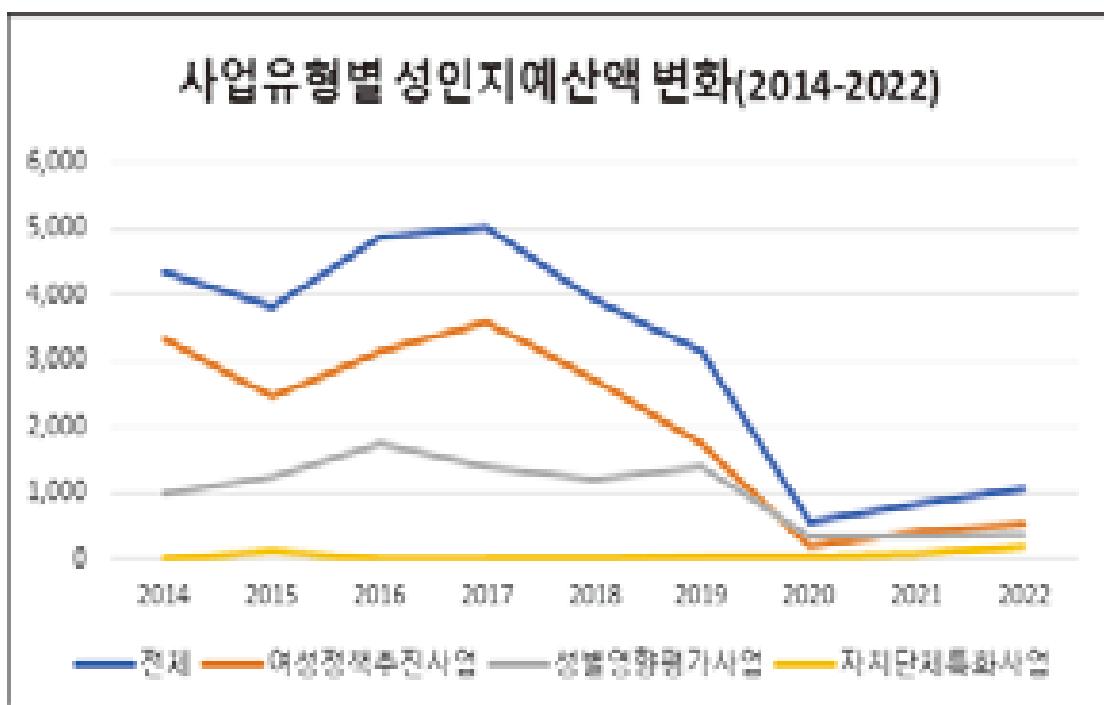
자료: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서(2014-2022)



[그림 5] 사업유형별 성인지 예산 사업 수(2014-2022)



[그림 6] 사업유형별 성인지 예산액(2014-2022)



[그림 7] 사업유형별 성인지 예산액 변화(2014~2022)

-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은 회계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운영되어 회계별 사업 선정의 내실화를 모색하고 있음

[표 7]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회계별 추진현황(2014~2022)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회계별	사업수	예산액
2014	총 계	83	433,238
	일반회계	80	432,494
	기타특별회계	3	744
2015	총 계	102	380,720
	일반회계	99	370,085
	기타특별회계	3	10,635
2016	총 계	124	488,649
	일반회계	120	475,369
	기타특별회계	4	13,280
2017	총 계	142	500,502
	일반회계	123	468,361
	기타특별회계	17	28,779
	기금	2	3,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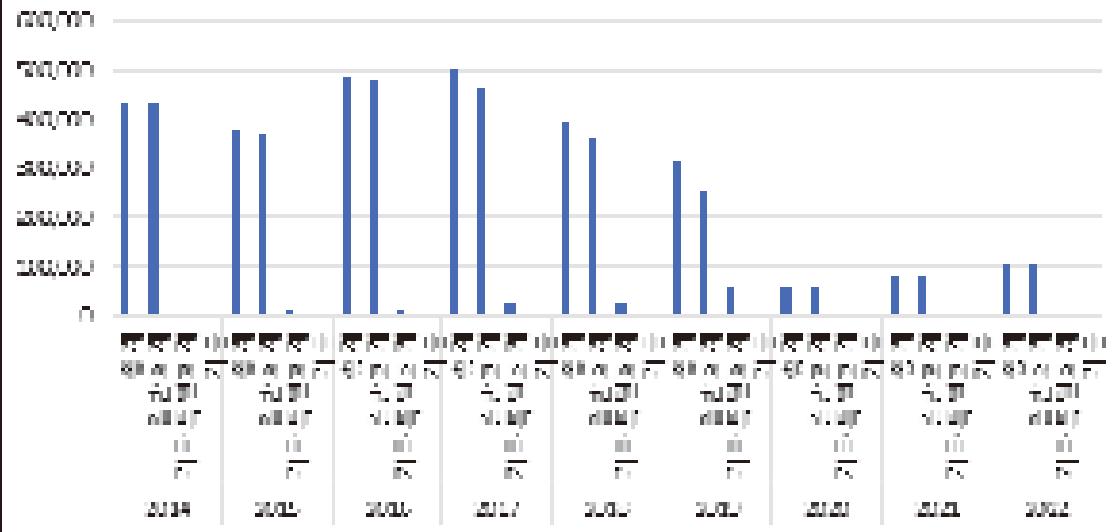
연도	회계별	사업수	예산액
2018	총 계	80	391,864
	일반회계	72	367,055
	기타특별회계	7	24,394
	기금	1	415
2019	총 계	100	314,674
	일반회계	88	253,616
	기타특별회계	11	60,053
	기금	1	1,005
2020	총 계	60	57,236
	일반회계	55	57,215
	기타특별회계	5	21
	기금	0	0
2021	총 계	78	82,046
	일반회계	71	81,810
	기타특별회계	6	172
	기금	1	64
2022	총 계	83	106,701
	일반회계	72	104,738
	기타특별회계	5	857
	기금	6	1,105

자료: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서(2014-2022)



[그림 8] 회계별 성인지 예산 사업 수(2014-2022)

회계별 성인지 예산액(2014-2022)



[그림 9] 회계별 성인지 예산액(2014-2022)

- 광주광역시의 성인지 예산액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1.14%, 2014년 13.24%, 2015년 10.95%, 2016년 11.74%, 2017년 11.60%, 2018년 8.11%, 2019년 5.79%, 2020년 0.93%, 2021년 1.31%, 2022년 1.60%이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회의 성인지 예산액의 비중은 평균 7.64%로 나타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비중이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과 2016년 8.3%, 2017년 8.0%, 2018년 9.0%로 8.0~9.0%대를 유지하는 현상과 비교하면, 광주광역시의 세입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성인지 예산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특히,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완성도 제고와 복식부기로 인한 과다계상방지,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정착을 위하여 사업수 축소로 성인지 예산액 비중이 0.93%를 차지하여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제도의 내실을 기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질적 성장과 더불어 양적인 팽창으로 1.31%, 2022년 1.6%를 차지하였으나, 앞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질적 수준을 담보로 한 양적 성장과 확대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사업 개발과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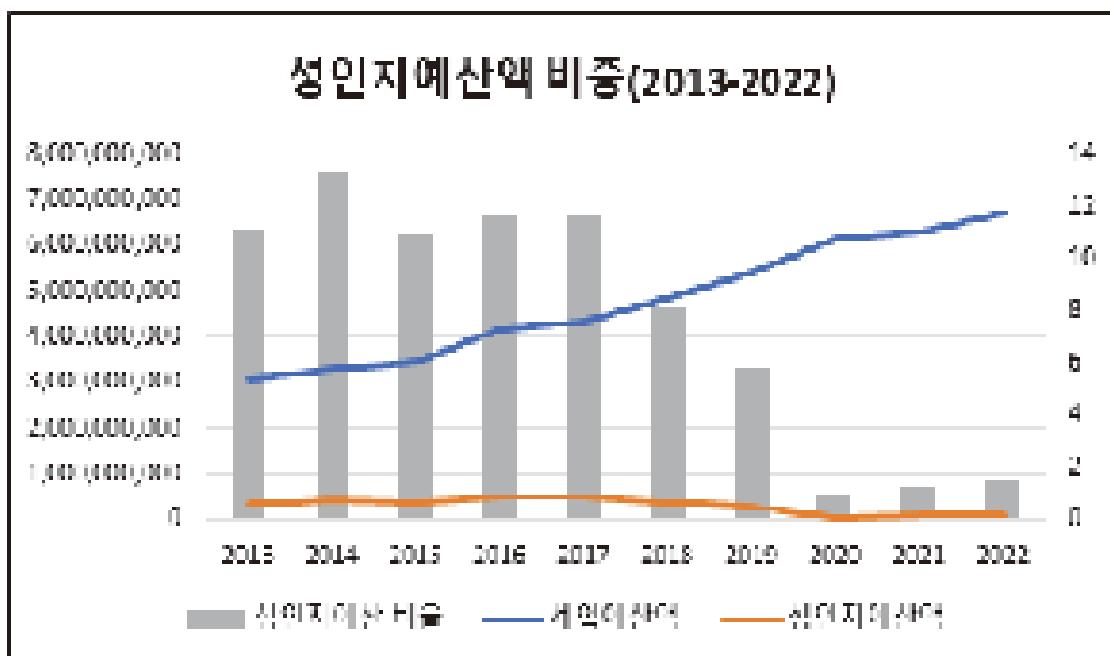
- 성인지 예산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세부사업내에는 1개의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1개의 세부사업에 사업담당자가 2명 이상이거나, 성별수혜분석의 어려움, 성과 목표 설정의 어려움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존재함.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 시스템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입력하다가 2023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성인지 예산서를 입력하는데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d-브레인 시스템은 내역사업이 클릭 후 입력이 가능하지만, 지방정부 시스템에서는 세부사업 기준으로만 입력이 가능한 상황으로 세부사업내에서 내역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할 경우 예산의 구조화를 하거나 세부사업 전체를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입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표 8] 광주광역시 세입예산액과 성인지 예산 규모 현황(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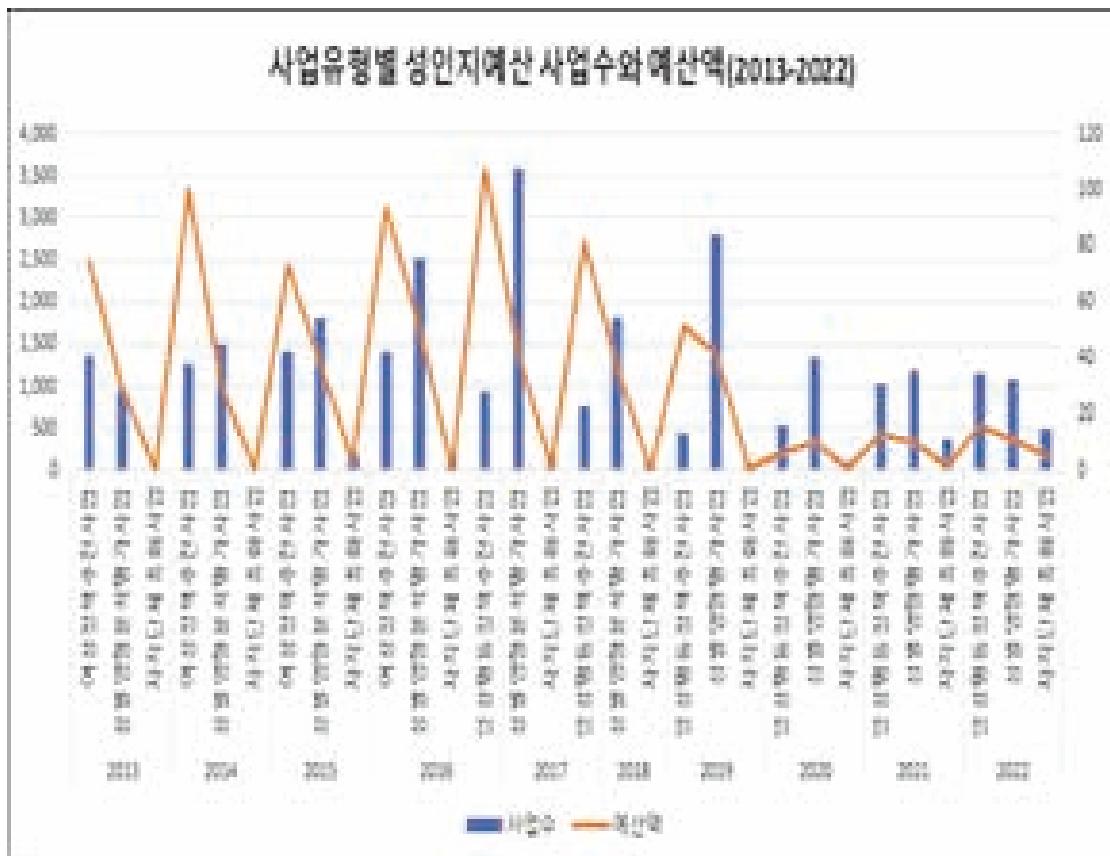
(단위: 천원, %)

회계연도	세입예산액	성인지 예산액	성인지 예산 비율
2013	3,109,278,461	346,206,000	11.14
2014	3,272,696,290	433,240,000	13.24
2015	3,477,142,929	380,723,000	10.95
2016	4,163,972,594	488,649,000	11.74
2017	4,314,108,458	500,501,844	11.60
2018	4,831,332,449	391,863,702	8.11
2019	5,435,381,444	314,673,827	5.79
2020	6,140,721,042	57,235,784	0.93
2021	6,283,143,474	82,046,418	1.31
2022	6,725,011,903	107,701,617	1.60

자료 :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서(2013-2022), 광주광역시청
<https://www.gwangju.go.kr/finance/boardList.do>



[그림 10] 성인지 예산액 비중(2013-2022)



[그림 11] 사업유형별 성인지 예산 사업수와 예산액(2013-2022)

- 성인지 예산사업의 유형은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 사업이며, 2013년부터 2022년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사업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성인지 예산 작성 초반에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가 점점 그 비중이 감소하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사업 유형의 변화 추세와 비슷한 현상으로 광주광역시의 2013년부터 2022년 성인지 예산사업 923건 중 양성평등정책사업은 309건(33.5%), 성별영향평가사업 559건(60.6%), 자치단체특화 사업은 55건(6.0%)의 순으로 나타남

[표 9]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사업유형별 규모 현황(2013-2022)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사업수	예산액
2013	여성정책추진사업	41(57.8)	2,487(7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40.9)	967(27.9)
	자치단체 특화사업	1(1.4)	7(0.2)
	총계	71	3,462
2014	여성정책추진사업	38(45.8)	3,335(7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5(54.2)	997(23.0)
	자치단체 특화사업	0(0.0)	0(0.0)
	총계	83	4,332
2015	여성정책추진사업	42(41.2)	2,447(6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52.9)	1,243(32.6)
	자치단체 특화사업	6(5.9)	117(3.1)
	총계	102	3,807
2016	여성정책추진사업	42(33.9)	3,146(6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6(61.3)	1,733(35.4)
	자치단체 특화사업	6(4.8)	8.15(0.2)
	총계	124	4,886
20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8(19.7)	3,571(7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8(76.1)	1,399(28.0)
	자치단체 특화사업	6(4.2)	35(0.7)
	총계	142	5,005
20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28.8)	2,703(69.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67.5)	1,208(30.8)
	자치단체 특화사업	3(3.8)	8(0.2)
	총계	80	3,919
20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13.0)	1,732(55.0)
	성별영향평가사업	84(84.0)	1,388(44.1)
	자치단체 특화사업	3(3.0)	27(0.9)
	총계	100	3,147

구분	사업유형	사업수	예산액
20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26.7)	202(35.2)
	성별영향평가사업	40(66.7)	343(59.9)
	자치단체 특화사업	4(6.6)	28(4.9)
	총계	60	573
202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39.7)	431(52.6)
	성별영향평가사업	36(46.2)	327(39.9)
	자치단체 특화사업	11(14.1)	61(7.5)
	총계	78	820
20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5(42.2)	523(49.0)
	성별영향평가사업	33(39.8)	369(34.6)
	자치단체 특화사업	15(18.1)	173(16.2)
	총계	83	1,067

자료: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서(2013-2022)

나. 추진 성과

○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 2018년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시범 실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 컨설팅 결과보고서 서식 작성, 2019년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2021년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결산 및 예산) 2회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실무교육 중심의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하고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상사업 수의 증가인 양적 팽창보다 관련 공무원과 컨설턴트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가 필수적이고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7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이후,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이 동일할 경우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위해 1인 컨설턴트에게 배정하는 시스템 도입,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실무 위주의 1:1 대면 컨설팅(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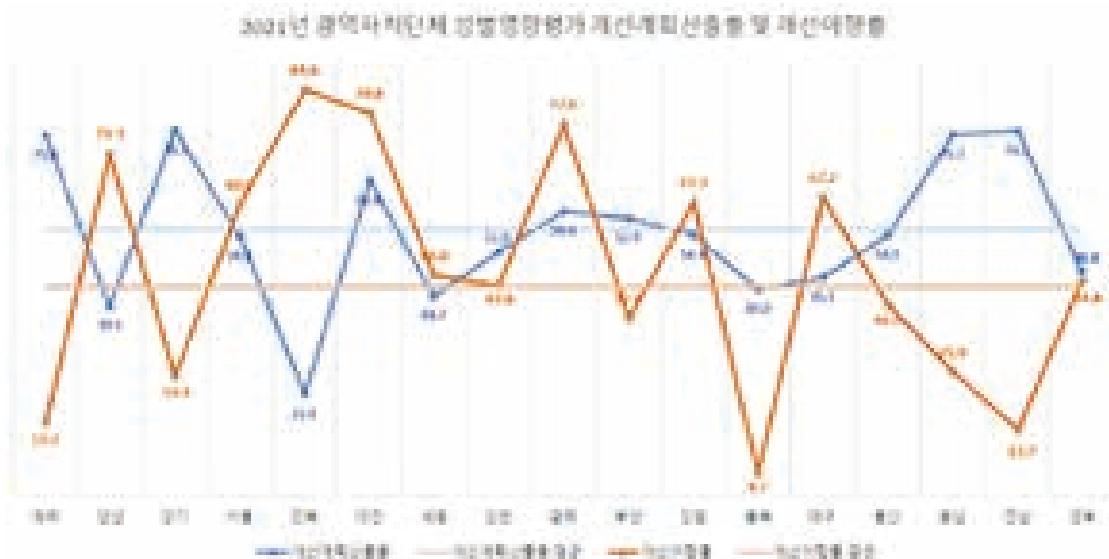
○ 성인지 예산 지원 및 컨설팅의 질적 제고

- 성주류화 전략 실행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가 충실히 작성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가치에 입각해 정책 수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과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시 컨설팅을 통해 조력하는 컨설턴트가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성주류화 전략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법률 및 여성학, 사회복지, 흥보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신규, 보수 교육 등을 거쳐 정해진 심사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위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활동가 그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의 비중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젠더거버넌스의 역량 강화 및 외연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음

[표 10]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현황(2022)

구분	연번	소속 및 직위	최종학위	전공
외부	1	연구소 대표	박사	사회학
	2	변호사	석사	법학
	3	시간강사	박사	행정학
	4	대학원생	석사	심리학
	5	공무원	박사	사회복지학
	6	박사수료	석사	가정학
	7	상담소 소장	박사	사회복지학
	8	여성단체(원장)	석사수료	실천여성학
	9	여성단체(사무처장)	석사과정	NGO협동과정
내부	10	여성단체(소장)	석사	사회복지학
	11	여성단체(사무국장)	학사	경영학
	12	연구원/강사	박사	경영학
	13	여성단체(성평등교육원장)	박사과정	사회학
	14	변호사	박사	법학
	15	광주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박사	여성가족정책
	16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박사	법학
	17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박사	사회복지학
	18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박사수료	사회학
	19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박사	사회복지학

-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계획 및 개선이행에 있어 높은 참여
 -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립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중 광주광역시는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 개선계획산출률 및 개선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그림 12] 2021년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산출률 및 개선이행률

-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추진을 통한 성주류화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
 -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예산서, 성별영향평가서의 항목의 연계성과 적절성 모니터링, 사업담당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사업별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을 현황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지속적인 환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사업 수행에서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증진하고 성인지 예산을 통한 사업별 성평등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성인지 예산 대상선정 선정 및 성과지표 설정에 반영하고 있음
- 대상 과제 선정의 내실화
 - 성인지 예산서는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여성가족과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이 과정에 사업 선정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 광주성별영향평가 센터의 컨설팅 지원, 2년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법과 작성사례를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음. 또한 사업선정 시 지역성평등지수의 취약 분야의 성평등 제고와

상위권 분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 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을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서에 전달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지원 업무 확대 및 업무 간 연계 강화

-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 성인지예·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광주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배치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을 확대하였음.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성인지 예산 담당자 간 유기적 연계 강화 노력을 통해 지역 성주류화 실효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업무 분화로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컨설팅 결과 검수까지 질적으로 강화된 성주류화 추진 과정에서 센터 업무 담당자들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가 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 모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는 자치구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자치구 성인지 예산 컨설팅 확대를 위해 해당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시 성인지 예산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함

5. 광주광역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가. 성주류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젠더거버넌스의 의의

- 성주류화정책의 행위주체에는 의회, 행정, 젠더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포함되며,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정책의 운영은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의회의 전문성, 행정의 수용성, 시민단체의 활동 등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즉 성주류화 과정은 젠더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구조화 과정은 여성단체의 성인지 예산분석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주도로 빠르게 확산되어 정착되어 왔음
-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도화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는 시민참여의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초기 과정부터 시민참여를 위한 개입 통로나 방법에 대해 논의나 실험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즉 원론적으로는 시민참여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안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질적인 개입을 위한 채널이 부재했던 것임
- 성주류화정책이 여성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법제화 되고 제도의 기반을 갖추었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는 이들이 배제된 채 주로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반드시 제도 운영과정에서 젠더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성인지결산위원회 등에 젠더전문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광주광역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성주류화정책의 확산

- 광주광역시는 성주류화정책의 추진 초기 당시 광주광역시의회 내 성평등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면서, 여성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성주류화정책에 의지와 경험을 갖은 여성 시·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제도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음. 이러한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역할 수행이 광주지역 성주류화정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성주류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의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등의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음. 광주지역의 추진 주체들은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정책의 초기 정착 및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역할과 함께 광주지역 행정 공무원의 높은 수용성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 행정의 높은 수용성은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 지자체장의 높은 의지 등이 견인했다고 할 수 있음. 성주류화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의 정비로 인해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했고,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 뿐만 아니라 행정과 의회, 시민단체, 언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거버넌스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광주광역시는 성인지 예산 추진 과정 속에서 행정, 여성단체, 젠더전문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젠더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성주류화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예산담당관실,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

가센터, 젠더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간담회, 자문 회의 등을 거쳐 대상과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음

- 그 과정을 살펴보면,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인력과 성주류화정책 담당 공무원이 협업하여 각 분야 젠더 전문가 및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성별영향 평가센터 전담인력이 사업조서 및 예산서, 계획서 등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대상과제를 1차 선정하고, 젠더거버넌스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선정에 대한 기준 및 활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회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침. 시비의 비율이 높은 사업과 지자체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성평등지수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 수준의 제고가 필요한 영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대상과제 선정 및 컨설팅,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등에 있어 행정의 담당부서와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의 협력, 젠더전문가 및 여성단체 참여 등으로 이루어져 왔음. 2017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이어서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모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상과제 선정과 중점관리과제에 의회, 행정, 관계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결합하여 토론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는 지방자치 발전뿐만 아니라 재정민주화의 원리 강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된 성인지 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그 실효성이 증진되고, 지자체에서 내용적 완성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함의를 갖는다 할 수 있음. 또 행정 주도의 성인지 예산제에 시민이 참여할 수 공간을 열고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젠더 정의를 앞장세운 재정민주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되고 있음(노채영, 2020)

다. 젠더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외연 확대

-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가 본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단체의 정체성도 증진과 함께 성주류화정책의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여성단체 및 활동가들을 성주류화정책의 제도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이들을 참여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결집력이 부족하여 정책에 닿지 못했던 지역사회 여성들의 수요와 니즈를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성주류화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젠더거버넌스 구성의 인적 외연을 대폭 확장하여 일반 시민들까지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성주류화에 대한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행정, 시민단체, 젠더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인, 선출직 의회 의원, 정책 당사자인 시민들을 실행 주체로 참여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참여 가능한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재의 진폭을 넓히고, 젠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운영 및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임
- 젠더거버넌스의 구성을 젠더전문가, 여성 활동가,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대폭 확장시켜야 할 것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연구자 및 젠더이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조직화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성주류화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함. 성주류화정책과 관련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여성단체로 집약될 수 있으며, 광주지역 소재 여성단체의 활동범위와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들의 기반과 영향력으로 여성의 언어와 주장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관료 중심의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 시민들의 참여와 모

니터링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성주류화정책 참여단의 창설,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 및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과의 연계 추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성인지 예산과의 긴밀한 연계 채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고보혜·정누리(2021).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연구. 광주여성가족재단.
- 노채영(2020). 광주지역 성주류화 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주제회의[여성] 북경행동 강령+25주년, 이행성과와 과제..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 박수범·김영숙·장윤선·김병권(2019).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사업(V):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주희(2022). 광주광역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실적 분석. 젠더 브리프 제56호. 광주여성가족재단.
- 정현지·김경희·이동옥·채현자(2021).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2018~2020)을 중심으로-. 인천여성가족 재단.
- 차인순(2019). 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여성연구 97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 론

좌장: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박해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
- 손은성 (충북성인지예산제협의체 위원)
-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
-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토론문 1]

강원 지역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박 해 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가.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 법적 근거

-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국가 법령에 근거함
-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근거함

○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체계

-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과정과 각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표1>과 같으며, <표1>의 과정에는 예·결산서 작성 과정까지만 다루며 심의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대상과제 작성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함. 예산과(주무부서: 대상과제 선정, 통보, 관리), 여성청소년가족과(협조부서: 성별영향평

가사업 및 양성평등정책사업 목록 제출),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지원기관: 대상과제 적절성 검토, 예산서 작성 교육, 예산서 작성 컨설팅)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 과정을 추진함

- 성인지 결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의 ‘성인지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결산부서인 회계과에서 성인지 예산대상 과제를 통보하는 데서 시작함. 성인지 결산은 회계과(주무부서: 대상과제 통보, 관리),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지원기관: 결산서 작성 교육 및 결산서 컨설팅)가 각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됨

<표1.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 및 운영 주체>

시기		추진내용
Y-1년	7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대상과제 확정(8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정책사업 목록 예산부서에 제출 : 여성정책부서 - 자치단체특화사업 목록 예산부서에 제출 : 실국 - 대상과제 선정 적절성 검토 :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 대상과제 선정 : 예산부서 ·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9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개별 사업부서 - 작성 컨설팅 :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 성인지 예산서 검토 확정(해당실국 → 예산부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 의회 제출(광역 11.11, 기초 11.21까지)
Y년		집행
Y+1년	1월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결산서 작성기준 작성·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결산서 대상과제 통보 : 결산부서 ·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교육 :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 성인지 결산서 작성(2월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결산서 작성 : 개별 사업부서 - 작성 컨설팅 :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결산서 검토 확정(해당실국 → 결산부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자치단체장 보고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결산서 지방의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안 부속서류로 성인지 결산서 의회 제출(5월말)

○ 성인지 예산제 관련 교육

- 강원도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2022년부터이며, 이는 2021년에 제정된 「강원도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5조(교육 과정 운영)에 따라 추진함
- 교육은 크게 강원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의 성인지 예산부서 및 양성평등 정책부서 담당자를 대상 교육(성인지 예산서 이해 및 대상과제 선정 기준,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 방향 등. **교육1**)과 강원도 광역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업무담당자 대상(성인지 예산 지표별 점검 포인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례 등. **교육2**)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교육1은 온라인(ZOOM 활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일정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담당자에게 강의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교육2는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원도 광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동일한 교육을 4회차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신청이 저조하여 1회차로 진행함. 교육1과 교육2는 2022년에 발간한 『2023년도 강원도 성인지 예산 지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기관담당자 및 업무담당자가 업무 진행 중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인쇄본과 PDF 파일을 제공함

나. 성인지 예산 작성 현황

○ 강원도 성인지 예산 규모 및 유형별 현황

- 강원도(광역)는 2013년 회계연도에 26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이래 2022년 회계연도까지 총 966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총 117개 사업, 344,490백만원임(예산대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비율 4.13%, 전년대비 9.8% 증가)

<표2. 강원도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2020~2022)>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개수	예산액	성인지 예산 비율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감률
2022	117	344,490	4.13%	9.8%
2021	109	313,801	3.94%	22.5%
2020	105	260,954	3.51%	95.1%

출처 :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비 강원도의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는 2022년도에 9위(1위 지역은 16.4%), 2021년 13위(1위 지역은 15.18%), 2021년 13위(1위 지역 16.54%)으로 최근 3년 간 중위 또는 하위 그룹에 속해 있음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성과를 좌우하지 않음.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제 추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예산의 규모는 크지만 성인지 예산서 작성률을 통한 사업의 성평등성 제고 및 파급력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사업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의미는 적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규모보다 과제의 적절성이 중요한데, 강원도의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¹⁾
- 강원도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유형별 현황

<표3. 2022년도 강원도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감률
소계	117	344,490	313,801	9.7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25,098	23,738	5.73%
성별영향평가사업	88	244,063	279,191	-12.58%
자치단체특화사업	9	75,329	10,872	592.85%

출처 : 2022년도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 성인지 예산서 대상과제 유형 중 성별영향평가사업이 88개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보이며(75.2%), 다음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22개(18.8%),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9개(7.7%) 순으로 나타남.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예산 비중은 7.3%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제 수 비중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예산 비중은 21.9%로 나타나 과제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높았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은 사업이, 자치단체특화사

1)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20년에 수행한 『강원도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방안』(안희정.조연숙)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서 대상과제로 선정된 9개 과제의 7년 간 예산규모 및 여성수혜율 변화추이를 살펴본 바가 있으나 과제의 적절성 전반을 분석하지는 않음.

업은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사업은 과제 수 비중과 예산액 비중이 거의 유사함

○ 강원도 성인지 결산 현황

- 강원도의 최근 3년 간 성인지 결산 결과, 2021회계연도는 109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되었고 성과목표 수 133개 중 80개를 달성하여 60.15%의 목표달성을 보이고 있음. 2020회계연도는 103개 과제에 대해 111개 성과 목표 중 57.66% 달성을, 2019회계연도는 112개 과제에 대해 120개 성과목 표 중 71.67%의 달성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로 목표달성을 부침이 있어 목표 달성과 관련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사업개수 대비 성과목표 수는 2019년도 1.07개, 2020년도 1.07개, 2021년도 1.22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과제 당 성과목표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성과목표의 설정과 관리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표4. 강원도 성인지 결산 현황(2019~2021)>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성과목표수	목표달성 지표수	목표달성을률
2021년도	109	309,053	133	80	60.15%
2020년도	103	278,915	111	64	57.66%
2019년도	112	195,116	120	86	71.67%

출처 : 각 연도 강원도 성인지 결산서

○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 컨설팅 현황

- 2021회계연도까지 성인지 예산 과제 및 컨설팅 과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회계연도부터 컨설팅 수당의 부족으로 컨설팅 수당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 강원도 광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과제의 약 60% 정도 과제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실시함. 그 결과 강원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성인지 예산 컨설팅은 약 400과제가 감소함

- 다만, 2021년부터 강원도 광역의 성인지 결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 2021년에 2020년도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컨설팅 실시(103개 과제), 2022년에 2021년 성인지 결산에 컨설팅을 실시함(109개 과제)

<표5. 강원도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 지원 현황(2020~2022)>

구 분	대상과제수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과제 수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2022년	798 (추정치)	689 (2023년도 성인지 예산 컨설팅 진행 중)	109 (2021년도 성인지 결산)
2021년	768	645 (2022년도 성인지 예산)	103 (2020년도 성인지 결산)
2020년	1,065	1,065 (2021년도 성인지 예산)	0

출처 :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각 연도 및 2022년도 3분기(누적) 컨설팅 질적보고 자료

- 결산서에 대한 컨설팅 결과, 기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추진실적을 분석하는 것이라 기술의 완성도는 대체로 성인지 예산서보다 높았음. 다만 결산서의 일부에서 성과목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대상자와 수혜자가 성인지 예산서와 불일치, 통계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음.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불충분하거나 향후 개선사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나 추가적인 계획이 기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음

2.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변화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중심으로

가.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 변화의 시작

- 강원도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회계연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 매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예산규모(과제수 및 예산액)가 점차 증가하는 수준(강원도 본청의 경우 2013년도 25개 과제에서 2021년도 109개 과제로 증가)에서 별다른 부침없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는 수준에서 추진되어 왔음

- 이런 흐름 속에서 제10대 강원도의회(2018.7~2022.6)에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함.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성평등 이슈에 관심을 가진 위원들이 연구회를 조직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젠더연구회, 저출생고령사회특별위원회 등)하면서 성평등 이슈를 의회에서 주요 이슈를 다루고자 노력하였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유선 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9월에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2020. 7), 예산부서, 여성정책부서, 강원성별영향 평가센터 등 관련 부서가 모여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함. 이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조례의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였음. 예산부서에서는 업무의 대부분이 여성정책부서와 성별영향평가센터의 협조 없이 예산부서가 자력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조례를 여성정책 부서가 맡기를 희망하였으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부서가 예산부서와 회계 부서임을 들어 여성정책부서와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예산부서가 조례의 주관부서를 맡기로 하였음. 이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성인지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최종적으로 본 조문은 삭제됨)
- 2020.9월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여러 논의 끝에 쟁점이 되었던 조항에 대해 보완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계류’됨
- 2021.10월에 앞서 계류된 조례안을 수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수정조항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됨
- 2021.10.15.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어 제정됨

나. 조례 제정 과정의 쟁점과 협의 결과

- 아래 <표6>은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각 과정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각 과정에서의 쟁점을 표로 정리한 것임. 이를 통해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향을 살펴볼 수 있음
- 임의로 초안(2020.7월 부서 협의시 검토안), 1차 상정안(2020. 9. 3.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출안), 2차 상정안(2021. 10. 6.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출안), 제정안(2021. 10. 15. 본회의 제출 및 제정 조례)으로 분류하고 각 조례안의 주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살펴보고자 함

<표6.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변화와 쟁점>

구분	조례(안) 주요 내용	쟁점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내용 : 성평등목표 수립, 중점관리 사업, 지침서,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교육 과정 운영, 컨설턴트 양성 지원, 도민 참여 및 지원, 업무의 위탁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주체 : 예산부서, 여성정책부서, 지원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 · 쟁점1 : 조례 담당부서 → 예산부서 vs 여성정책부서 · 쟁점2 : 중점관리 사업 → 관리 문제 · 쟁점3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 심층분석 실시의 시간적 여력 부족. 특히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컨설팅 진행만으로도 시간 측박
1차 상정안	<p>초안에서 변경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등) 삭제 제18조(컨설턴트 양성 지원 등) 제1항과 제2항을 하나로 합치면서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을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제19조(도민 참여 및 지원)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 단순 내용 변경 : 위원 위촉 대상 중 ‘도내 사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삭제, 공무원의 위원 임기 관련 문구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주체 :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논의결과 : 보완심사가 필요하여 계류 결정 · 쟁점1 : 중점관리 사업 → 선정·관리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성 부족 ⇒ 중점관리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로 선정할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관리하는 것 · 쟁점2 : 제6조 지침서의 필요성 →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매년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침서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 쟁점3 : 제7조 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가 심의권을 가지면서 예산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 성인지 예산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문제,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를 당연직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제 · 쟁점4 : 양성평등 vs 성평등 용어 → 두 단어를 모두 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양성평등, 성평등을 선택적으로 사용
2차 상정안	<p>1차 상정안에서 변경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중점관리사업) 제1항제3호 : 중점관리 사업 중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강원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주체 :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논의결과 : 수정조항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 · 쟁점1 : 중점관리 사업 → 선정·관리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성 부족,

구분	조례(안) 주요 내용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지침서 등) 성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 관련,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의 법적 근거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임을 명시 제7조(위원회 설치)에 '성인지 예산위원회'를 '성인지 예산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기능 삭제. 이에 따라 관련 조항(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모두 변경. 제2항(타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삭제 	<p>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조항을 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 있음 ⇒ 강원도의 성평등 목표사업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p> <p>·쟁점2 :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상벌 규정을 둘 필요. 향후 이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 이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집행부와 협의가 안되었을 것</p> <p>·쟁점3 : 컨설턴트 → 현재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활동 중.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p>
제정안	<p>2차 상정안에서 변경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당연직까지 포함하던 데서 위촉직으로만 제한, 위촉직 연임 1회로 한정 제10조(위촉해제)에서 4호(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p>* 논의 주체 : 본회의</p> <p>* 논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p> <p>·쟁점 : 없음</p>

출처 :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제304회 임시회(기획행정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등

- 조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중점관리 사업 조항임. 중점관리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관리의 어려움을, 의회에서는 중점사업의 모호성을 언급함. 대표발의자인 정유선 의원의 설명과 설득(중점관리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로 적절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음. 다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관리 사업 중 일부 내용만 삭제 후 제정.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향후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요구됨
- 또 다른 쟁점은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것. 성인지 예산 관련 위원회 설치 관련, 초안과 1차 상정안에서는 모두 심의·자문 기능을 두고 있는데, 초안에 비해 1차 안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본 조례의 주무부서를 예산과로 하되, 여성정책부서에

서 지원하겠다는 부서 간 협의에 따른 것으로 여성정책부서에서 운영하는 양성 평등위원회 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었음

-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와의 기능 구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자문 기능으로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함. 심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이나 지침서 발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조항은 의미있다 할 것임

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변화

- 성인지 예산서 지침서 발간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22년 8월에 성인지 예산제도 이해, 지표별 작성 방법(예산서, 결산서)와 더불어 사업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마다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결산서 짹을 이룬 사례 2개를 제시하였음. 본 지침서 제작에는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 인력과 외부 컨설턴트 등 5명이 참여하였음
-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 실시 : 위에서 언급한 성인지 예산 지침서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서 기관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음
- 강원도 성인지 예산자문위원회 개최 : 2022년 성인지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12명. 당연직 4, 위촉직 8), 첫 안건으로 성인지 예산 지침서에 대한 자문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음
- 강원도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수립(예정)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 수립의 근간이 되는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올해가 마지막 적용 해이며 내년부터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이 적용되어야 하기에 강원도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은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3.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과제

가. 강원도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 정비

○ 성인지예·결산 분석 필요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적절성과 충분성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의원들이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및 집행부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특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안 의결, 결산의 승인 등 예산과 관련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인지예·결산 분석서를 제공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있음

○ 중점관리 과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 정리 필요

- 중점관리 과제를 부서에서 단순히 성인지 예산서로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는 침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인지, 특별히 관리해야 할 과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함. 따라서 (1) 어떤 과제를 중점관리 과제로 볼 것인가 (2)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함. 특히 중점과제 관리 시 성평등목표 영역별로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조례를 통해 중점관리 과제에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민참여와 관련한 규정의 명료화 필요

- 조례 제17조에서 성인지 예산제 관련 도민참여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들어있으나 현재까지 실행된 적은 없음. 향후 시민참여를 통한 성인지 예·결산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결산위원회에 젠더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 성인지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체계 정비²⁾

- 강원도의 성평등 이슈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 및 그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 필요
 -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과제의 성과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과제를 부서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성주류화 관련 교육 확대
 - 성인지 예산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서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감소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을 기본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인지 예산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관련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함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지원 확대 필요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강원도청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안희정.조연숙, 2020), 업무담당자들은 성인지 예산서의 각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성별 수혜분석,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과목표 작성, 성평등 기대효과 지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모두 20% 이하),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44.5%로 나타나 제도 효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도 역시 낮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더불어 각 사업담당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효과적일 수 있음. 가령, 경제성이나 효율성과 성인지적 관점의 형평성이 가치 충돌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일회성 서면 컨설팅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대면 컨설팅(또는 여러 차례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체계 정비’ 제안 중 일부는 안희정.조연숙(2020)의 『강원도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방안』 96쪽~101쪽에서 가져옴.

<참고자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22), 『2023년도 강원도 성인지예산 지침서』.
- 안희정·조연숙(2020), 『강원도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2020, 2021),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강원도의회(2020), 「제2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회의록」.
- 강원도의회(2021),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토론문 2]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임 혜 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

1.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경과

가. 제도 운영의 변화

1) 제도 변화에 따른 변화

- 「지방재정법」개정(2011)으로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 경기도는 2013년도부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음
- 2017년부터는 성인지 예산 대상이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확대되었고, 경기도는 2017년 특별회계, 2018년부터 기금사업을 포함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2022년 경기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일반회계 236개, 기타특별회계 13개, 기금 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비율이 높지만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경기도 운영 변화

- (교육 및 컨설팅) 경기도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해 왔음
 - 공무원 교육 과정은 4시간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2시간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였음.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금지되고 온라인 교육이 준비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무원 교육이 실시되었음. 2012년~2021년 10

년 동안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예·결산 교육은 총 31회, 8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도 2012년부터 실시했고, 2012~2021년까지 1,995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결산검사)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은 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으나 2017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성인지 결산서의 부실 문제 가지적되면서 성인지 결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동일한 사업의 실적이 전년도와 상이한 점, 실적산출에 있어 목표치와 실적치 기준이 다른점,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 실적의 미기재 등이었음
- (성인지 결산 컨설팅) 결산검사 의견을 반영하여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경기도는 2018년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부터 성인지 결산 컨설팅을 도입하였음(컨설팅 시기는 결산이 이루어지는 2019년)
 - 성인지 결산 컨설팅은 2019~2021년까지 총 592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2020년 성인지 결산 컨설팅시 71.2% 사업이 컨설팅을 반영했고, 이에 따라 지표별 작성이 충실히지고, 개선사항 도출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음(임혜경, 2021b)
- (대상과제 컨설팅) 2020년도부터는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컨설팅을 도입하게 되었음. 이는 도의회에서 대상과제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 대상과제 선정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부족 등을 반영한 것이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과 성평등 목표를 반영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음
 - 2019년 하반기 경기도의회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 질의는 총 31건이었으며 적절한 대상과제 선정, 성과관리 강화,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증진 등이 제기되었음(임혜경, 2020: 3)
 - 민선7기 공약사업에 ‘성인지 예산 확대’가 포함되고 주요 공약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연계가 추진계획에 반영되었음. 이에 예산담당관의 요청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 ·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음(임혜경, 2019; 임혜경, 2020)
 - 여성정책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성평등목표와 실국 성평등실행목표에 대한 경

기독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하여 관련 연구를 통해 지역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목표 수립, 실국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였음(임혜경 외, 2019). 그리고 실국 성평등목표를 중심으로 2021년 실국 워크숍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 연계를 추진하였음. 이때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실국 단위로 위촉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모두 컨설팅 하도록 계획하였음

- 대상과제 선정에 대한 컨설팅은 2020년~2021년까지 321개 사업에 대해 실시 하였음

- (실효성 증진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하였음 (2020.7.15.)

-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침서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 컨설턴트 양성, 도민참여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음
- (지침서 개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에는 '경기도 성인지 예·결산 운영지침서'를 개발하였음. 성인지 예산제운영협의체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음

- 올해는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10년을 맞아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임혜경, 2022)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주로 10년의 추이를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 대표사례를 발굴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임

나. 성인지 예산 작성 규모

- (전체)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 사업수는 2013년 203개에서 2022년 254개로 증가하였고, 2022년 사업수가 가장 많음. 10년 평균 200여개 내외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음. 성인지 예산 예산액은 2013년 9,865억원에서 2022년 19,184억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예산은 약 2.5배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의 증가만큼 성인지 예산 작성 규모가 증가하지는 못했음

- (양성평등정책사업) 양성평등정책사업은 초기에는 예산규모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였음. 양성평등정책사업은 2013년 68개 사업으로 사업의 33.5%이고, 예산액은 6,872억 원으로 성인지 예산 총액의 69.7%를 구성함. 2022년은 59개 사업으로 예산비중이 23.2%로 약간 감소했고 예산액은 3,445 억 원으로 성인지 예산의 18.0%를 구성함
 - 사업수의 감소수와 비교하여 양성평등정책 사업의 예산규모가 2013년보다 2022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전 부서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으로서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대상사업 중에서 구성 비중이 높은 분야임. 2013년 사업수는 126개로 전체 사업의 62.1%였으며, 2022년에 90개로 51.7%를 구성함. 그렇지만 예산액은 2013년 2,964억 원으로 30.0%였고, 2022년 4,597억 원으로 13.5%를 구성해 예산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음
 - 사업수에 비해 예산액은 적은 비중으로 소규모 사업이 다수 편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자치단체특화사업) 2013년 자치단체특화사업은 9건이고 예산액 비중도 0.3%에 불과하였음. 자치단체특화사업수는 2019년 이 후 증가했고, 2022년 43개 사업으로 사업의 16.9%이고, 예산액은 11,141억 원으로 성인지 예산액의 58.1%를 구성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자치단체특화사업의 예산액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주요 공약사업의 성인지적 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 운용을 확대한 노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 경기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사업수 및 예산액(2013-2022)

(단위: 개,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사업수	예산액								
합계	203 (100.0)	9,865 (100.0)	171 (100.0)	19,301 (100.0)	177 (100.0)	18,019 (100.0)	164 (100.0)	14,506 (100.0)	174 (100.0)	13,107 (100.0)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8 (33.5)	6,872 (69.7)	87 (50.9)	17,562 (91.0)	95 (53.7)	17,405 (96.6)	70 (42.7)	10,867 (74.9)	66 (37.9)	11,278 (86.0)
성별영향 평가사업	126 (62.1)	2,964 (30.0)	81 (47.4)	1,733 (9.0)	79 (44.6)	596 (3.3)	91 (55.5)	3,481 (24.0)	90 (51.7)	1,772 (13.5)
자치단체 특화사업	9 (4.4)	28 (0.3)	3 (1.8)	5 (0.0)	3 (1.7)	18 (0.1)	3 (1.8)	157 (1.1)	18 (10.3)	85 (0.6)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 사업수	예산액								
합계	195 (100.0)	26,245 (100.0)	200 (100.0)	34,039 (100.0)	201 (100.0)	27,501 (100.0)	239 (100.0)	18,018 (100.0)	254 (100.0)	19,184 (100.0)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5 (23.1)	13,201 (50.3)	47 (23.5)	1,338 (3.9)	46 (22.9)	2,197 (8.0)	54 (22.6)	2,859 (15.9)	59 (23.2)	3,445 (18.0)
성별영향 평가사업	137 (70.3)	12,994 (49.5)	126 (63.0)	1,742 (5.1)	127 (63.2)	3,461 (12.6)	150 (62.8)	4,512 (25.0)	152 (59.8)	4,597 (24.0)
자치단체 특화사업	13 (6.7)	49 (0.2)	27 (13.5)	30,958 (91.0)	28 (13.9)	21,842 (79.4)	35 (14.6)	10,647 (59.1)	43 (16.9)	11,141 (58.1)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각년도) 성인지 예산서; 임혜경(2017)의 자료를 재구성. 임혜경(2022)에서 재인용.

2. 성평등목표 반영 대상과제 선정

가. 성평등목표와 실국 성평등 이슈 발굴

- 성평등목표 수립의 중요성을 반영해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성평등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성인지 예산 성평등목표와 실국 성평등실행목표를 제시하였음(임혜경 외, 2019).

-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인지 예산) ②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지역성평등지수를 근거로 한 성인지 예산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다양한 가족의 복지 및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다수 발굴하여 작성하고 있음. 2020년~2022년 사업의 성평등목표 영역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일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경기도 성인지 예산 성평등목표(2020~2022)

성평등 목표	실국 성평등목표 예시(안)		
○ 성평등 목표 설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가족, 의사결정, 안전, 경제활동’ 지표를 집중관리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경기 도정 목표에 부합 	홍보 기획관, 대변인	성평등한 공동체	홍보에서의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확산
		고용격차해소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도민 공감대 조성
		일생활균형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정책홍보 확대
		여성안전보장	폭력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양성평등, 지속 가능한 경기도’ 	문화체육 관광국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체육 종사자의 성인지 의식 제고
		고용격차해소	문화체육계 여성의 임금 및 경제적 지위 개선
		일생활균형	문화체육 참여자를 위한 돌봄 환경 조성
		여성안전보장	문화·체육 종사자 성인지·인권 감수성 제고

자료: 임혜경, 정혜원, 남승연(2019). 「경기도 성평등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일부 인용

- 그리고 실국 성평등 이슈를 반영한 성평등 실행 목표를 제시하여 성인지사업 발굴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 예를 들어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의 경우 양성평등의식문화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거나 고용격차해소를 위한 홍보를 기획하도록 하는 등의 방향성을 제시해 실국 성평등 이슈를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 분석의 방향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나. 성과목표 수립을 위한 작성 예시

- 경기도 성인지 예·결산 운영 지침서에는 성평등목표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 성과목표 수립에 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이 자료는 공무원 뿐 아니라 컨설턴트가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사업의 분석, 성과목표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작성 예시에 활용한 사업은 경기도 성인지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의 성과목표를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영역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작성 예시를 제공한 것임
- 각 자치단체 사업의 특성과 성인지 예산 작성 사업을 고려하여 이러한 예시를 제시하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선정해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표 3] 경기도 성인지 예산 성평등정책 영역 작성 예시

정책 영역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 작성 예시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교육, 문화, 역사 등 도민 대상으로 특정 콘텐츠를 생산, 전달, 교육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을 점검·개선, 관계자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성과목표 수립 <p>ex) 홍보사업에 대한 성인지가이드라인 적용, 문화기획 참여자의 성인지 교육 실시, 역사교육을 위한 여성문화 콘텐츠 발굴 등</p>

자료: 임혜경(2021). 경기도 성인지예결산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부록 p132.

3. 시사점

- 성인지 예·결산서는 법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예·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되는 첨부서류라는 점에서 그 위상과 의미를 가지는 제도임. 따라서 기본 절차가 잘 이행되고,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표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리고 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 운용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수립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이후부터 대상과제 선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해 왔고, 주요 사업의 성인지적 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전개했음. 이에 따라 자치단체특화사업의 예산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음. 즉,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성인지 예산 운용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방향성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와 성 주류화에 좀 더 활용할 것인지, 자치단체의 대규모사업 또는 주요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운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성인지 예산 운영 계획 수립(중기적 관점), 성평등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임혜경. (2019). 『2020년 경기도 성인지예산안 분석』. 「이슈분석」 제137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혜경, 남승연, 정혜원(2019), 『경기도 성평등 목표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혜경(2020), 『경기도 성인지예결산제 실행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혜경(2021a), 『경기도 성인지예결산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임혜경(2021b), 『2020년 경기도 성인지 결산 분석: 성과목표 달성과 컨설팅 반영』, 「이슈분석」 제196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임혜경. (2022). 『경기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중, 11월 완료).

[토론문 3]

충북 지역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손 은 성

(충북성인지예산제협의체 위원)

1.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현황

가. 법적 근거

1) 법령

- 「성별영향평가법」(2011.9.제정)과 「양성평등기본법」(2014.5.전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기반 마련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함.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③이 2011. 9. 6.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게 됨
- 충청북도에서도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함

2) 충청북도 조례

-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1>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조례

법령	관련조항	제정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2.12.28.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	2005.12.30. 2016.1.1. 전부개정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조(목적) …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3.29.

3) 충청북도 기초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조례 운영 현황

- 충청북도는 2019.3.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3월 청주시는 충청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이어서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이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2> 충청북도 시·군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	주요내용
충청북도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2019.3.29.	- 중점관리 사업 선정·관리 - 지침서 발간 - 성인지 예·결산서 심층분석 - 협의체 운영 - 컨설턴트 양성 지원
청주시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19.3.15.	
충주시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19.5.31.	- 중점관리 사업 관리
제천시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20.4.10.	- 지침 마련
진천군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20.9.23.	- 위원회 운영
음성군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19.7.5.	

- 충청북도는 조례에 성인지 예·결산서 심층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예산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과 컨설턴트 양성 지원 조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음

나.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

1)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담당관, 성인지 결산서는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매년 작성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서 충청북도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담당자(관, 부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시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목록을 제출받아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음. 자문·심의 기구로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를 통해 대상과제, 중점사업에 대한 심의·선정을 함

2) 대상사업과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 성인지 예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성됨. 작성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성인지 예산서 지침 일반을 따르되,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 의견이 반영됨
- 중점관리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통해 1차 선정되고, 성인지 예산제 협의체에서 심의·선정하여 운영함
- 2019년부터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여 2022년 4년째 운영하고 있음. 2019년에는 17개 사업, 2020년 28개 사업, 2021년 30개 사업, 2022년 31개 사업 선정함

다.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현황

1)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 운영 현황

-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는 2019년 3월 제정된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7조 협의체 설치 조항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해인 2019년 9월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협의체는 매년 2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성인지 예산 과제 선정, 중점관리 사업 선정, 성인지예·결산서 심층분석에 대한 자문 및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대

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고 있음

- 협의체의 자문 의견은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음

2) 충청북도 성인지예·결산서 컨설팅 지원

-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충청북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시 전문 컨설팅 을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충청북도에서는 1,004건의 성인지예·결산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성인지 예산 과제(1,044건) 중 컨설팅(758건) 지원 비율은 72.6%로 나타남 (정유리 외, 2021)
- 컨설팅 지원을 위해 충북성별영향평가는 매년 신규 컨설턴트 양성과 기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음
-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 컨설턴트의 양성을 위한 노력은 타 지방자 치단체와 비교하여 성인지 예산 컨설팅 과제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정유리 외, 2021)

3)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 2014년 이후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 작성 과제 수는 2014년에 가장 많은 건수인 169건을 작성함. 이후 2015년에 54건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표3> 충청북도 연도별 성인지예산 사업 수

년도	대상 사업 수(개)	성인지 예산액(백만원)
2014	169	214,680
2015	54	54,481
2016	73	78,072
2017	71	73,519
2018	89	101,165
2019	115	665,706
2020	127	517,470
2021	130	571,154
2022	143	538,447

- 충청북도 성평등 목표는 매년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서 작성을 위해 목표를 설정

하였음. 2020년부터는 성평등 목표를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이 수립됨에 따라 계획에 맞추어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었음

- 하지만 성평등 목표에 따라서 대상 과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성평등 목표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성평등 목표 달성과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 달성과의 연계성은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함
- 매년 수행된 성인지예·결산서의 종합분석에서도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달성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성평등 목표 수립의 과정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표4> 충청북도 연도별 성평등 목표

2016~2019 성평등 목표	2020~2022 성평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한 사회참여<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사회참여 영역 확대 및 사회적 지원강화-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 개발 기회 제공● 취약계층 권익보호<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 총족- 취약계층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친화환경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여성편의 시설 확충 및 생태친화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참여의 성별격차해소<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성주류화 역량 강화- 성평등한 일자리, 고용격차 해소●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폭력 근절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평등의식 향상 및 차별문화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성평등교육 체계적 실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정착과 차별개선

5)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 사업 선정·관리

- 2019년 17개 중점관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58.8%(10건), 2020년 28개 중점관리 사업 중 성과목표 달성을 53.6%(15건)로 달성 사업 수는 증가하였으나 달성을 5.2%p 감소하였음(정유리 외, 2021)
- 중점관리 사업은 충청북도의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중점관리 사업은 2022년 성인지 예산서 전체(143개)의 21.7%인 31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기존의 과제 27개에 신규로 4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의 측면에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과제와의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음.
- 성과목표 달성을, 당해연도 성평등 목표 부합성, 별도 관리방식 등에서 중점과제의 관리에 차별성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중점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계획하였음

6)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2013~2021)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이후 2013년도 예산서에 대한 현황분석(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부터 매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음
- 종합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추이, 성과목표 달성을, 수혜자 추이 등을 매년 분석하여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함
-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심층분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함(충북여성재단). 매년 종합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에 기여를 하여 왔음. 종합분석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인지예·결산서 심의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음

7) 결산심사위원회 젠더전문가 위촉 운영(2020회계연도~2021회계연도)

- 충청북도 결산심사위원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젠더전문가 위촉을 하였음.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와 결산의 성인지적 관점 심사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음
-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함의를 도출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환류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

가. 조례제정과 운영 체계

1) 체계적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 충청북도는 2019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체계적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됨. 대상과제 선정과 작성에 대해 전문컨설팅 지원은 성인지 예산서의 체계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컨설팅 지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대상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예산서 작성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성 평등 목표의 수립은 성인지 예산제의 성평등 성과목표가 충청북도 전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함

2) 환류기능의 강화

-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결사심사위원회의 젠더 전문가 위촉 운영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의회에 성인지예·결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결산 심사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3)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

- 조례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예산 교육, 지침서 발간, 자문·심의 기구인 협의체 운영 등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

나. 제도 운영의 한계

1) 중점과제 선정과 관리 미흡

- 충청북도는 매년 중점과제에 대한 선정·운영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중점과제가 중점과제가 아닌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했음

- 중점과제에 대한 특별한 관리시스템이나 운영방식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않아서 중점과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었음. 중점과제 선정에 대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성평등 목표 이행 과정에서의 합리적 관리 수단 방안이 필요함

2) 대상사업과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보완

- 2020년부터 성평등 목표는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성인지 예산제도가 충청북도의 성평등 목표 실현에 접근하도록 수정되었음
- 하지만, 성인지 예산 과제 운영과 성평등 목표와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는 미흡 함.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가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상 과제 선정 시 성평등 목표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함

3)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내용 보강

- 2013년부터 매년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타 지자체에서는 드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하였음. 하지만 2020년부터 수행된 심층분석의 내용의 보강이 필요함. 예산과 연구 기간의 문제를 보완하여 결산서와의 연계성, 성과목표와 성평등 목표, 대상과제와의 연계성, 환류에 대한 평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4) 젠더 거버넌스 운영 구축 마련

- 충북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 예산제협의체와의 운영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지원으로 잘 수행되고 있음
- 하지만 지역의 컨설턴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 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의 한계를 갖고 있음

3.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제

가. 조례 개정

- 1) 성인지 예산 지원센터 개설과 시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개설이 필요함. 인천광역시와 제주도의 조례에서 지원센터 조항이 신설되었고, 충청남도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조례에 포함하였음. 2019년 이후로 변화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함
- 2) 협의체 운영의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보강이 필요함

나. 운영체계 강화

- 1) 중점관리 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중점관리 사업의 관리체계는 사실상 중점관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기 힘듦. 따라서 중점 관리의 평가와 이행점검 등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2) 성과관리와 환류 기능 강화. 중점사업과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의 성과목표를 점검하고 실질적 달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3)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마련

다. 성인지 예산제도 확대 운영과 거버넌스

- 1) 성평등 목표 수립, 대상과제 선정, 성과목표의 달성을 제고 등 성인지 예산제도 전반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거버넌스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2) 전문성 강화.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내실화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확대 운영
- 3)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 교육 확대 운영

<참고문헌>

- 정유리 외. 2021. 「2021 충북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충북여성재단·충청북도.
- 이정희 외. 2018. 「2018년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충북여성재단.
- 2013년~2022년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서. 충청북도 재정공시.
-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서. 충청북도의회.
-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서. 충청북도의회.
- 충북뉴스. 2019.03.18. “육미선 충북도의원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높여야”.

충청북도 <https://www.chungbuk.go.kr>

충청북도의회 <https://council.chungbuk.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토론문 4]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최근 흐름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

1.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 성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 대회에서 성주류화를 성평등을 위한 전략을 채택한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활동은 예산 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이며,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인데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젠더관점을 결합하고 성평등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 구조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Council of Europe, 2005를 인용한 조선주 외, 2019: 23). 성인지 예산제도가 각 국에서 도입된 이후에는 재정제도에서 젠더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명확한 젠더관점을 전반적 예산 및 재정관리 과정 속에 적절한 절차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사업 추진의 성인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OECD, 2017; IMF, 2017를 인용한 조선주 외, 2019: 24)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국가재정법』제정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시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2: 6).

나.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연혁

- 『국가재정법』제정 이후 2008년에는 2009회계연도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2010회계연도 예산사업(29개 기관에서 195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22: 7). 2010년에는 2011회계연도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기금사업까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다.
-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지침 및 양식은 사업의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계,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 반영, 국가성평등지수분야 지정,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선정 등이 추진되어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반영되었다.
-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9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협의하여 작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 국회 및 국제기구 등에서 지적한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지예·결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이 기획재정부 훈령 제518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개편되어 그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다.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1)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제26조)로서, 2010년도에 29개 기관 195개 사업에 대해 작성한 이래, 작성 기관 수, 사업 수, 예산 규모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작성되어왔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38개 부처, 302개 사업, 32.7조원 규모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22b: 5).
- 현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유형은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구분되며, 국가의 성평등적인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³⁾.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 직접목적 사업은 96개, 14.4조원, 간접목적사업은 206개 18.3조원으로 작성되었다.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89개로 11.6조원에 별도 표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82개로 5.1조원에 별도 표기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2b: 5~8).

2) 성인지 결산서 작성 현황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또한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국가재정법」제57조),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38개 부처, 304개 사업, 36.3조원을 집행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2a: 3).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의 집행률은 97.3%였고, 직접목적 사업의 집행률은 99.1%, 간접목적 사업의 집행률은 96.3%였다. 2021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을 은 77.6%이었으며, 2021회계연도 직접목적 사업의 성과목표치 달성을⁴⁾은

3) 직접목적 사업은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추진사업 등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간접목적 사업은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재원재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논의를 통해 선정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포함하는 검토통보서는 여성가족부가 통보한다(기획재정부 외, 2022b: 10).

4)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목표가 처음 포함된 2011회계연도에는 성과목표 달성을 68.3%이다(대한민국

77.0%, 간접목적 사업의 성과목표치 달성을 78.0%였다. 한편,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목표치 달성을 86.8%로 나타났다(대한민국정부, 2022a: 4 및 추가분석).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 방향

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통한 심의 기능 강화

- 2021년부터 기존의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확대·개편하여 성인지 예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본방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다(조선주 외, 2021: 58~63).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으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를 개선하였다.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7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위촉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 한편,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국장급 공무원을 추가하여 성인지 결산 논의 및 범부처 협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협의회 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성인지 예·결산 관련 사전 심의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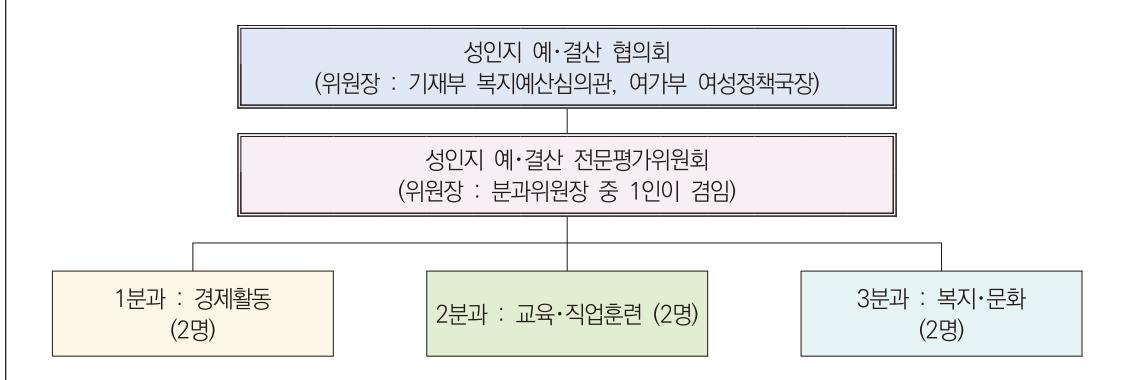
〈그림 1〉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변화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운영 근거 부재• (위원) 8명(정부위원 4, 민간위원 4) * 기재부, 여가부, 행안부, 통계청• (심의 강화)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운영 근거 마련• (위원) 11명 이내(당연직 위원 7, 민간위원 4) * 기재부, 여가부,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심의 강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

자료: 조선주 외, 2021: 60

정부, 2012: 3)

〈그림 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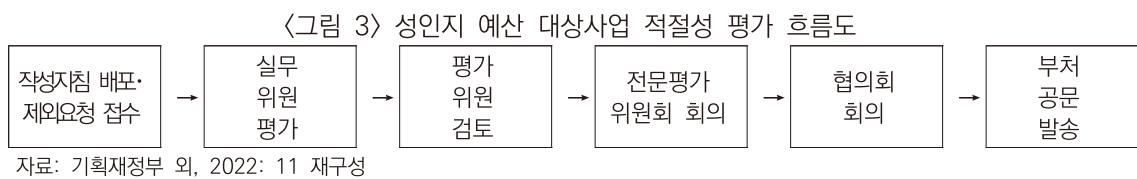


자료: 조선주 외, 2021: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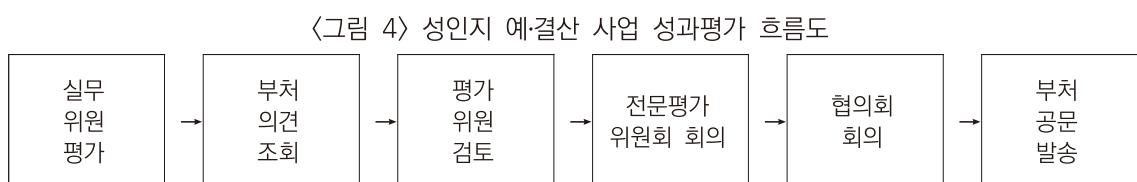
나.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운영을 통한 환류 기능 강화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전 심의하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1기 전문평가위원회의 주요 평가는 ①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②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로 크게 두 가지이다(조선주 외, 2021: 64~70).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재정·젠더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위원회에는 각 분과별 실무위원 6인으로 총 18인의 실무위원이 구성된다.
- 각 평가는 큰 틀에서 실무위원 평가, 평가위원 평가, 전문평가위원회, 협의회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실무위원은 재정·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교차평가하고, 평가위원은 실무위원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그 결과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심의 후 평가결과로 확정되어 각 부처에 권고되며, 각 부처는 이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한다.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는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전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사업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있다.

- 2023년도 평가대상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사업,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부처 제외요청 사업 및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직권상정한 사업이다. 직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목표 설정·관리 필요성을 평가하고,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목표 실현 가능성, 성인지적 성과목표 설정 가능성을 평가하여 적절성여부 및 총평을 제시한다(기획재정부 외, 2022: 80~85).



-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는 성인지 예산서를 3년 연속으로 작성한 사업⁵⁾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토대로 5 단계로 등급화하며, 사업별 개선 권고 등을 제시함으로써 성인지적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2022: 5).
 - 계획 영역(사업계획의 적절성), 성과 영역(양적 성과, 질적 성과), 환류 영역(결산 평가의 환류, 집행 및 모니터링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 후 영역별 총평을 제시한다.



다. 성주류화의 부처의 책무성 강화

- 2019년 5월 이후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5) 2022년 사업 평가 대상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사업이다.

2020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훈령 제142호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은 2019년부터 권고되기 시작하여 2021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2020: 14) 및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매뉴얼(기획재정부 외, 2020: 15)부터 명시적으로 권고되었다. 각 부처 내 업무분장에 따라 성인지 예산 작성 지원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전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및 사업별 작성내용을 사전 검토하며,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관리함으로써 부처별 성인지 예·결산서의 질을 제고하며, 성주류화에 대한 부처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2: 13).

〈그림 5〉 부처 내 성인지 예산 업무 및 역할

기획재정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예산서 작성 총괄- 부처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서 총괄 취합·관리- 사업별 성과목표 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예산 운영 지원- 대상사업 적절성 사전 검토- 사업별 작성내용 사전 검토-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관리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외, 2022: 13

<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검색일자: 2022.10.31.).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대한민국정부(2012),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대한민국정부(2022a),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대한민국정부(2022b),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2022),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지침』.

조선주·성민정·박수범·김효주·김병권·김해람·안주희·김수지(2021), “성인지 예·결산 협
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이택면·김영숙·김효주·성민정·권도연·김병권·김해람·안주희·김수지(2019), “성
인지 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Council of Europe(2005), 『Gender Budgeting : Final report of the Group of
specialists on gender budgeting(EG-S-GB)』, Directorate General of Human
Rights, Strasbourg.

IMF(2017), 『Gender Budgeting in G7 Countries』, April 19, 2017.

OECD(2017),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6/3.

[토론문 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이 화 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 운영 현황

가. 법적 기반

- 제주지역은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를 제정함. 다만, 심의 체계가 상이한데 제주도는 별도의 성인지 예산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표1>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조례 현황

기관명	법규명	조항	공포 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6조(공무원 교육), 제7조(주민 참여 및 교육), 제8호(분석 및 평가), 제9조(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2021.9.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6조(공무원 교육), 제7조(주민 참여 및 교육), 제8호(분석 및 평가), 제9조(성인지예산제 지원센터), 제10조(성인지 예산위원회)	2019.11.2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2.10.31. 기준.

나. 과제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현황

가) 성인지 예산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서는 2013년 155개 과제를 시작으로, 2020년 238개, 2021년 259개, 2022년 309개로 전국 추세와 같이, 증가해옴

<표2>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추이(2020~2022)

(단위: 개, 억원, (%))

회계별	2020		2021		2022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총계	238 (100)	1,445 (100)	259 (100)	1,722 (100)	309 (100)	2,553 (100)
일반회계	231 (97.1)	1,305 (90.3)	252 (97.3)	1,555 (90.3)	297 (96.1)	2,229 (87.3)
기타 특별회계	3 (1.3)	123 (8.5)	3 (1.2)	158 (9.2)	8 (2.6)	316 (12.4)
기금	4 (1.7)	17 (1.2)	4 (1.5)	9 (0.5)	4 (1.3)	9 (0.4)

자료: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나) 분야별 작성 현황/전국 비교

- 제주는 사회복지(40.8%), 환경(29.4%), 농림해양수산(7.0%)분야 순으로 많은 비중을 보임. 이는 제주지역 전체 예산의 분야별(기능별)과도 동일한 순임
-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국 73.6%에 비해 제주 40.8%로 비중이 낮은 편임. 반면 환경(28.3%p), 공공질서 및 안전(5.1%p), 농림해양수산(4.4%p), 국토 및 지역개발(2.3%p) 분야 성인지 예산 작성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게 분포하고 있음. 이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제 발굴 시, 부서별로 과제를 고루 발굴하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정책 분야가 대체로 다양하게 발굴되는 효과가 있음

<표3>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국 성인지 예산 분야별(기능별) 비중(2021)

(단위: %)

구 분	2021년 성인지 예산서 분야별(기능별) 작성 현황		
	제주	전국	제주-전국
일반공공행정	5.1	3.8	1.3
공공질서 및 안전	5.8	0.7	5.1
교육	0.2	1.1	-0.9
문화 및 관광	2.1	4.5	-2.4
환경	29.4	1.1	28.3
사회복지	40.8	73.6	-32.8
보건	2.0	2.5	-0.5
농림해양수산	7.0	2.6	4.4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	2.7	-1.7
교통 및 물류	0.6	3.4	-2.8
국토 및 지역개발	6.1	3.8	2.3
과학기술	0.1	0.1	0

자료: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전국 자료<박수범·이택면·권도연·김해람(2021), '2021년 지방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다) 성인지 예산 사례 분석

- 기존 연구는 대체로 종합적인 분석의 연구가 많으며 성인지 예산 사례 분석의 측면은 찾아보기가 어려움. 이는 성인지 예산 부실 작성 및 성인지 예·결산서 한류가 부족하기 때문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도 양적인 확산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운영된 것이 최근 2~3년 사이의 운영 기조 변화에 따른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결산서의 활용성의 측면을 강화하고자 본 자료에서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활용해 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함
- 본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중 발굴한 기준은 작성한 사업 중 파급력을 기대했을 때,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며, 당시 공약 사업에 해당하는 과제임. 특히 성과목표의 의미가 유의미하다고 보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함

<표4>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서 사례

사례	부서명	사업명	성인지 예·결산서	성평등 이슈
1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운영	<p>성별 수혜분석<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수혜자 계 : 100 여성 : 58(58.00%) 남성 : 42(42.00%) ○ 2020년 사업 수혜자 계 : 200 여성 : 116(58.00%) 남성 : 84(42.00%) ○ 2021년 사업 수혜자 계 : 392 여성 : 238(60.71%) 남성 : 154(39.29%) ○ 사업수혜자 균거 ※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참여 등록인원) <p>○ 성과 목표명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참여자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제주 더 큰 내일센터 참여자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횟수) 목표 2회, 실적치 2회</p> <p>○ 결과에 대한 원인 :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대상 성평등 교육 2회 실시로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텁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기본 역량과 협업 강화</p> <p>○ 향후 개선사항 : 탐나는 인재 교육프로그램 기본공통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 확대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p>	<p>성별 수혜분석<수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수혜자 계 : 100 여성 : 58(58.00%) 남성 : 42(42.00%) ○ 2020년 사업 수혜자 계 : 200 여성 : 116(58.00%) 남성 : 84(42.00%) ○ 2021년 사업 수혜자 계 : 392 여성 : 238(60.71%) 남성 : 154(39.29%) ○ 사업수혜자 균거 ※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참여 등록인원) 	<p>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및 성별 분업이 발생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성별 분업에 따른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생활균형제도 등의 이유로 아직 의사가 높음</p> <p>또한 청년 투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에 따르면 여성 창업 성공사례 발굴 필요성을 제시함</p> <p><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 평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2020, 서울시여성가족 재단)></p>
2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대상자 계 : 68,075 여성 : 37,603 (55.24%) 남성 : 30,472 (44.76%) ○ 2020년 사업 대상자 계 : 70,722 여성 : 38,937 (55.06%) 남성 : 31,785 (44.94%) ○ 2021년 사업 대상자 계 : 75,788 여성 : 41,633 (54.93%) 남성 : 34,155 (45.07%) ○ 사업대상자 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 통계출처: 제주시청 동지역 주민등록인구통계(2021년 12월 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수혜자 계 : 2,859 여성 : 0 (0.00%) 남성 : 0 (0.00%) ○ 2020년 사업 수혜자 계 : 213 여성 : 122 (57.28%) 남성 : 91 (42.72%) ○ 2021년 사업 수혜자 계 : 744 여성 : 567 (76.21%) 남성 : 177 (23.79%) ○ 사업수혜자 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자: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자 - 통계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치매파트너 관리자 시스템 	<p>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높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이에 따른 치매 유병률 또한 여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p> <p>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가운데 남자는 60.9%가 노후준비를 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자는 39.3%에 그쳤음. 더욱이 여성노인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수준이 낮고 연금도 적어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근로 교육 건강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 수준이 높게 나타남(출처: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반면 남성</p>

사례	부서명	사업명	성인지 예·결산서	성평등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명 : 치매예방교육 및 파트너교육 남성 참여자 증가 (남성 참여율). 목표 20%, 실적치 23.8% 출처: 치매파트너관리자 시스템,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ANSYS) ○ 결과에 대한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활용한 치매 예방 치매파트너 교육 운영으로 치매 인식 개선에 기여. - 도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다양한 곳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성 참여율 증가 효과 ○ 향후 개선사항 : 모바일 앱 활용 치매예방 파트너 교육 지속 추진, 도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p>의 경우, 강한 남성성의 경향으로 아픔 초기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p> <p>돌봄 제공자의 측면에서 보면 돌봄의 주제공자는 가족 돌봄 참여자 및 종사자의 경우 여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전통적 성역할 등으로 인해 돌봄 제공자가 여성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p> <p>따라서 돌봄 제공자의 남성 참여의 확대를 통한 돌봄 교육 강화 및 건강에 대한 예방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p>		
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대상자 계 : 23,412 여성 : 11,369 (48.56%) 남성 : 12,043 (51.44%) ○ 2020년 사업 대상자 계 : 18,702 여성 : 9,851 (52.67%) 남성 : 8,851 (47.33%) ○ 2021년 사업 대상자 계 : 22,573 여성 : 11,490 (50.90%) 남성 : 11,083 (49.10%) ○ 사업대상자 근거 만0~5세 아동 및 부모, 보육교직원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수혜자 계 : 14,042 여성 : 9,324 (66.40%) 남성 : 4,718 (33.60%) ○ 2020년 사업 수혜자 계 : 8,566 여성 : 5,454 (63.67%) 남성 : 3,112 (36.33%) ○ 2021년 사업 수혜자 계 : 7,215 여성 : 4,545 (62.99%) 남성 : 2,670 (37.01%) ○ 사업수혜자 근거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명 :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성이용률 제고 (센터이용남성수/센터이용자수) 목표 40%, 실적치 37% ○ 하단 작성 2021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보고서(프로그램 참여 7,215명 중 남성2,670명 이용) ○ 결과에 대한 원인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혜자의 전체적인 수는 감소하였지만, 아빠 체험 프로그램 증설로 남성 참여율을 소폭 증가 ○ 향후 개선사항 : 아빠 체험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대상자 계 : 23,412 여성 : 11,369 (48.56%) 남성 : 12,043 (51.44%) ○ 2020년 사업 대상자 계 : 18,702 여성 : 9,851 (52.67%) 남성 : 8,851 (47.33%) ○ 2021년 사업 대상자 계 : 22,573 여성 : 11,490 (50.90%) 남성 : 11,083 (49.10%) ○ 사업대상자 근거 만0~5세 아동 및 부모, 보육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수혜자 계 : 14,042 여성 : 9,324 (66.40%) 남성 : 4,718 (33.60%) ○ 2020년 사업 수혜자 계 : 8,566 여성 : 5,454 (63.67%) 남성 : 3,112 (36.33%) ○ 2021년 사업 수혜자 계 : 7,215 여성 : 4,545 (62.99%) 남성 : 2,670 (37.01%) ○ 사업수혜자 근거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p>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국가 중 최저로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기정 및 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의 5배로 인식 개선 필요(2015년 기준).</p> <p>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이며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경험은 돌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조윤경, 2011), 여성과 남성 간의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우명숙, 2011)</p> <p>(나성은,'남성의 양육 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폐미니즘 연구, 2014.재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대상자 계 : 23,412 여성 : 11,369 (48.56%) 남성 : 12,043 (51.44%) ○ 2020년 사업 대상자 계 : 18,702 여성 : 9,851 (52.67%) 남성 : 8,851 (47.33%) ○ 2021년 사업 대상자 계 : 22,573 여성 : 11,490 (50.90%) 남성 : 11,083 (49.10%) ○ 사업대상자 근거 만0~5세 아동 및 부모, 보육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사업 수혜자 계 : 14,042 여성 : 9,324 (66.40%) 남성 : 4,718 (33.60%) ○ 2020년 사업 수혜자 계 : 8,566 여성 : 5,454 (63.67%) 남성 : 3,112 (36.33%) ○ 2021년 사업 수혜자 계 : 7,215 여성 : 4,545 (62.99%) 남성 : 2,670 (37.01%) ○ 사업수혜자 근거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성인지 예산서,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성인지 결산서 중 해당 부서 과제

- 성평등 이슈를 참고하여 사례1을 보면, 첫째, 성별 분업에 따른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에 따른 성평등 의식 제고의 필요성, 둘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 생활균형제도에 대한 요구 필요성에 따른 좋은 일자리 발굴, 셋째로 창업과 같은 노동 활동에 있어서 여성 창업 사례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참여 활성화로, 세 가지 이슈로 해당 과제에 접근할 수 있음
- 다양한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부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부서의 성평등 목표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함. 현재 제주지역의 성평등 목표는 사업의 정책 분야를 통해 정책의 목적과 연계성이 보다 큰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성과 목표와 연계되는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려다 보면, 역으로 성과목표에 맞춰서 성평등 목표를 작성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평등 목표 수립 시, 부서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운영이 필요함

2. 지원 현황

가. 회계 담당자 교육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예산교육이 별도로 추진된 시기는 2013년으로,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임. 매년 8월경 예산 담당자 집합교육에 1시간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강경숙·김민선, 2016)
- 최근 2~3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합교육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도교육청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여 지원하는 것에 비해 도의 경우 코로나19로 미 실시됨.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표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교육 현황(2013~2022)

(단위: 회,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시 횟수	2	1	1	1	1	1	1	미실시		
교육 인원	384	239		300여명				과제담당자 교육 미실시(코로나19)		

자료: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내부 자료.

나. 컨설팅

- 2017년부터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과제별 컨설팅 및 2018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단계에서 자치단체 특화에 대한 일대일 대면 컨설팅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한시적으로 이루어짐. 여전히 서면 방법 중심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어 컨설팅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많음

<표6>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컨설팅 현황(2015~2021)

(단위: 과제 수)

회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265	237	459	504	531	576	607
성인지 예산	265	236	246	264	287	302	382
성인지 결산	0	1	213	240	244	274	225

자료: 각 년도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기관 컨설팅의 경우 미포함함)

- 특히 성인지 예산 대상 유형 중 성별영향평가는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져 성인지 관점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편임. 그러나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경우,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과제의 경우는 대면 컨설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연구

-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연구를 본원에서 개원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20년의 경우 도 예산담당관을 통해 수탁 연구를 진행해옴

<표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 예산 연구 실적

(단위: 개)

연구 제목	연구자	연구기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강경숙, 신승배	2020.5.~7.	수탁기관: 도 예산담당관
지방의회 성인지예·결산 심사 안내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강경숙, 김희경, 선민정	2019.8.~1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강경숙, 이해옹	2017.8.~1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분석	강경숙, 김민선	2015.8.~1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쟁점 및 개선 방안

가. 법적 기반

- 제주도는 2019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지 예산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음. 그러나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및 홍보, 공무원 교육 등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위원회의 경우 별도로 성인지 예산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성 및 운영하지 못함. 반면 도교육청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렇지만 연계하느냐 별도로 운영하는 가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를 운영하는 부서와 관련 기관이 얼마나 성 주류화를 위한 업무의 책무성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업을 하고자 하는가에 있음

나. 추진 체계

- 전담 인력이 1인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매해 바뀌고 있음. 업무를 추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센터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체계 내에서 체계화할 필요 있음
- 센터의 경우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인력이 국비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주력 사업으로 보고 있음. 성인지 예·결산의 경우, 연구원 개원 초기부터 관심이 높기 때문에 원내 연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관련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임(광주의 인력 운영 참고)

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중점관리사업)의 발굴 체계화

- 성별영향평가의 과제가 성인지 예산 과제의 7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발굴 기준은 3년 이상 사업의 경우, 제외하고 부서 별로 과제를 1개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통 기준⁶⁾과 자율 기준을 두어 부서의 협의를 통해 과제 발굴 진행함
- 과제 발굴 시, 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신규 과제 발굴 (안)도 공유함. 과제 선정 시, 부서의 의견을 거쳐 자율 선정 과제로 대체될 수 있음. 해당 협의과정을 갖는 이유는 첫째, 성별영향평가서를 강제하여 작성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좋지 않음(제도의 강제성에 대한 저항감, 불만) 둘째, 중점 과제가 발굴되지 않더라도 모든 과제를 성인지적으로 볼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
- 협의 체계를 강화하나 중점 과제가 발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점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더라도 관련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중점과제의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협업체계 및 특화된 전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성별영향평가와 같이, 특정부문 성인지 예산 심화 연구, 특정 및 중점과제 발굴 체계 마련 등)

6) 발굴 시, 공통주제로 '신규 공약 사업, 사업 분야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 관련 사업, 청년 지원 사업, 안전 사업,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격차 예상 사업, 정책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대상과제 기준을 보고 있음. 또한 부서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 선정 기준도 마련함(자율 선정 기준: 수혜집단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사업, 도민생활과 관련되는 사업).

- 기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공약사업이 포함하고는 있으나, 성인지 예산 대상 유형 중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필요함(광주의 위원회 운영 참고)
- 해당 과제의 발굴 시, 전반적인 과제에 대한 대상과제 발굴 준비 위원회, 심의 위원회의 운영 필요(<표8>참조)

<표 8>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운영 방안

단계	주요 내용	담당	
예산 편성 단계	성평등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향: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수요, 자치단체장의 성평등 관련 공약사항,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수립 주기: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 방식: 지역주민 수요조사, 전문가 조사, 민관 네트워크 등 	
	대상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기준: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고려, 종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선정기준 마련 절차: '과제 선정에 대한 부서별·시민 의견 수렴 → 대상과제 선정 → 관련 위원회 심의·확정 성평등정책관은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예산 담당관에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사업부서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결산서 평가 결과와 실적치를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지방의회 제출/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심사 및 도민 모니터링 	
예산 집행 단계	추진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예산부서) 이행점검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부서/시민사회/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결산 및 환류 단계	성인지 결산서 작성·제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점검 	예산부서/시민사회/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지방의회 제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승인 및 도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 및 결산검사위원회 성인지 전문 역량 강화 지원 	예산부서/시민사회/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성과 분석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 예산 편성에 반영 	예산부서/시민사회/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자료: 강경숙·신승배(2020).‘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라. 지원 방안

가) 교육 및 컨설팅

- 교육 및 컨설팅은 선택사항이 아닌,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기초적인 지원 사항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예산 부서는 성인지 예산만이 아닌, 예산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반면 도교육청의 경우, 성인지 예산 교육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대체하여 운영함)
- 컨설팅의 경우, 대면 컨설팅 없이, 서면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담당자와 컨설턴트 간 컨설팅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없음. 컨설턴트와 공무원간의 라포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성인지 예산 업무는 공무원이 원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컨설팅의 경우, 자치단체 특화사업과 양성평등정책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에서만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유형의 사업은 필수로 대면 컨설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 연구의 경우, 2015년 개원 때부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옴. 향후 연구 및 지원 사업으로 양성평등담당관제를 활용하여 성평등 목표의 수립,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을 결합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인지 예산서 사례 분석 및 성인지 통계의 활용을 통한 연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마.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시급히 추진할 사항

가) 의회와 성별영향평가센터의 협업 강화

- 예산심의 내실화를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 알기 쉽고 간략한 지침서 제작

나)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 젠더 거버넌스 내에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광주사례 참조)
- 민간의 참여 확대, 도민의 점진적인 관심 제고,
- 과제선정 및 우수사례 선정 등에 도민이 함께 참여

다) 예산담당부서의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 노력

-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 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

< 참고자료 >

강경숙·김민선(201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경숙·신승배(202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나성은(2014), 「남성의 양육 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폐미니즘 연구, 재인용.

박수범·이택면·권도연·김해람(2021), 「2021년 지방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2015~2021), 2015년~2021년 제주성별영향평가 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이재경(2020),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주특별자치도(2015~2021), 2016~202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행정안전부(2020),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 행정안전부

[참고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s://law.go.kr/>) 참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jewfri.kr/>)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index.htm>) 참조

